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대회

외국국적 가족 내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일시 2023.4.27.(목) 10시-12시

장소 법무법인 태평양 3층 회의실 Room3

주최 난민인권센터,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이사이의 창,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후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대회

외국국적 가족 내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결혼이민 이외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주여성과 이주아동들,
특히 본인의 체류자격이 주체류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이들이
가정폭력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유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 시 2023년 4. 27.(목) 10시 - 12시

참가신청

신청 QR

장 소 법무법인 태평양 3층 회의실 Room 3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주 최 난민인권센터,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아시아의 창,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후 원 법조정책연구원 **나우**

PROGRAM

사회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실태조사 결과보고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은혜 [아시아의 창]

토론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나영정(타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종합토론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외국국적 가족 내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2023.4.27.

연구진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김민정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은혜 아시아의 창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목차

1. 들어가며.....	4
2. 실태조사 개요 및 진행경과.....	6
3. 실태조사 결과: 대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16
1) 체류 연장 및 체류자격 취득에 대한 불안.....	16
2)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	17
3) 자녀의 성장에 대한 걱정.....	18
4) 경제적 자립 및 독립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	19
5) 가족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	20
6) 한국사회에서의 고립, 언어, 한국생활과 법률에 대한 부족한 접촉.....	21
7) 친족 및 커뮤니티의 비포용성과 배척.....	22
8) 폭력에 대한 인식.....	24
9) 경찰(공공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응.....	24
10) 외국인으로서 이혼의 어려움.....	25
11) 가족내의 아동학대.....	26
12) 그 외 여성들이 처하는 가정폭력.....	27
13) 쉼터 찾기와 이용의 어려움.....	27
14) NGO 상담 요청과정에서의 어려움.....	28
4.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도적 문제.....	29
1) 지원체계(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쉼터, 가족센터)의 제한적 역할.....	29
2) 피해자 보호시설의 한계점.....	33
3)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과정.....	37
4) 이혼과 관련한 문제.....	45
5) 체류 관련 제도의 문제.....	47
5. 결론 및 정책제언.....	56

1) 현행 제도의 개선.....	56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도입.....	60
<부록> 외국 국적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해외법제	64
1) 미국.....	64
2) 캐나다.....	66
3) 호주.....	66
4) 뉴질랜드.....	67
5) EU.....	68
6) 독일.....	69
7) 영국.....	69
8) 네덜란드.....	70
<토론문>	71
1)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에 접근하며 나영정/타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71
2)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76

1. 들어가며

한국사회에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 체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9 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주여성 폭력피해상담소가 전국적으로 개소되었다. 그러나 이주여성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체계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다양한 체류자격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정책의 공백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이주여성의 숫자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인 2019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 년에는 1,178,521 명에 달했다. 그 중에서 결혼이주비자로 체류하는 여성은 106,786 명으로 9%였다.¹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한국국민의 배우자로 표상화 되어 있다. 한국국민과의 가족구성만이 “한국사회의 구성원²”으로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는 한국국민과 그의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닌 다양한 배경의 가족구성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한국국민과의 결혼이 아닌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상황을 경험하고 지원하면서 이주여성들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상황과 이를 반영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들을 경험해온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진들은 2022 년 5 월 초동모임을 가지며 외국국적자들로 이루어진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을 지원했을 때의 경험들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마주했던 한계들과 명료하지 않은 결말들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외국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해 기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들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폭력피해 당사자를 인터뷰한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었다. 현재 깊은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당사자들을 찾고 피해상황을 물어보고 드러내는 것은 당사자들의 정서적 안정 및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했다. 때문에 본 연구는 가급적 과거에 폭력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들을 인터뷰하였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정폭력 경험을 외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¹ 2019 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재구성. 코로나가 발발한 2020 년부터는 전체 체류 이주민의 숫자가 감소하였으나 결혼이주비자(F-6) 소지자의 체류 여성들의 수치는 거의 일정하였다. 공항과 이동경로의 폐쇄로 이주민의 수치에 변동이 있었으나 결혼이주비자 소지자의 체류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수치의 인용은 우리사회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이주여성들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문제의 중요성이 덜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수치에는 혼인 귀화자 수는 제외되어 있다. 2021 년 10 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2019 년 누적 혼인귀화자는 135,056 명이고 이 수치는 남녀가 포함된 수치이다.

² 여성가족부는 2020 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의 추가 개소 계획을 알리며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2020.01.13,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폭력피해를 경험한 지인이 있다는 이주여성들도 인터뷰하며 그들의 경험과 의견도 청취했다. 더불어 외국인 가정내 가정폭력을 상담하고 지원한 경험이 있는 상담활동 종사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경험한 사례와 상담 과정에서의 고민과 의견들을 기록하였다.

해당 연구는 한정된 상황 속에서 특히 종속체류자격의 이주여성과 미등록 이주여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종속체류자격이란 당사자의 체류자격이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 체류자의 '동반가족'이기에 주어지는 체류자격으로 "주 체류자와의 관계가 소멸하거나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이 종료하면 그의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도 종료³"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1(방문동거) 자격 소지자와 F-3(동반)자격 소지자의 사례를 담았다. 또한 주 체류자의 체류자격 소멸이 명확하게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난민신청자 가족들의 경우 이주여성의 난민신청의 주된 사유가 남편인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있기에, 같은 난민신청자 기타(G-1-5)이거나 인도적체류자 기타(G-1-6) 체류자격이라도 체류상태에 권력관계가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종속체류자격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종속체류자격이 아니더라도 이주여성의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례는 연구에 일부 포함시켰다.

연구를 통한 정책제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연구진들은 이주민들이 처한 체류의 불안정성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무엇이 이주여성에게, 그리고 이주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기는 어려웠다. 특히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가해자의 처벌은 이주민의 경우 한국에서의 강제퇴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원치 않은 가족해체의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 이주아동의 경우는 과중한 죄책감의 무게가 씌어 지기도 했다. 연구진들은 성급한 정책제언을 하기 보다는 고민스러운 영역은 드러내고 앞으로의 논의로 남겨두는 선택을 하기로 했다.

본 연구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국사회의 다층적 상황의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와 지원방법이 논의될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연구에 쉽지 않을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어 준 당사자들, 커뮤니티 내의 동료 이주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정폭력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지인들, 그리고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경험의 기록들이 한국사회의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³ "국내·외국인간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은 지금!"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2021.

2. 실태조사 개요 및 진행경과

1) 연구참여자

총 14 명을 인터뷰하였다. 직접 가정폭력을 경험한 7 인의 피해 당사자를 만나 인터뷰하였고, 당사자의 피해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인 2 인을 만났다. 이에 더해 당사자의 사건을 상담하고 지원한 이주 관련 기관의 종사자 5 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듣고, 대응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래 대상자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례에 대해서는 **2) 피해 사례**에서 다시 정리하였다.

순번	관계	순번	관계
인터뷰 1	당사자	인터뷰 8	피해자와 같은 언어권 지인
인터뷰 2	당사자	인터뷰 9	피해자와 같은 언어권 지인
인터뷰 3	당사자	인터뷰 10	이주민상담 종사자
인터뷰 4	당사자	인터뷰 11	이주여성상담 종사자
인터뷰 5	당사자	인터뷰 12	공익법률단체 종사자
인터뷰 6	당사자	인터뷰 13	NGO 종사자
인터뷰 7	당사자	인터뷰 14	쉼터 종사자

2) 피해 사례

인터뷰를 통해 총 25 건의 사례를 취합하였다.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우크라이나, 예멘, 이집트, 중국, 케냐, 터키, 태국 국적의 이주여성 및 아동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체류자격으로는 방문동거(F-1), 동반(F-3), 난민신청(G-1-5),

인도적체류(G-1-6), 인도적체류자의 가족(G-1-12), 미등록, 비전문취업(E-9), 유학(D-2), 결혼이민(F-6) 및 귀화자의 사례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 사례 중 7 건은 피해 당사자의 경험이고, 3 건은 이주여성이 지인의 피해사례를 증언한 것이며, 15 건은 활동가 및 변호사가 지원한 사례이다. 자칫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사례 목록에서 국적, 거주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3) 사례별 피해상황**을 통해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 순번과 사례별 피해상황의 순번은 다르게 배치하였다.

구분	피해자 나이대	피해자 체류자격	가해자 체류자격	사례 제공자
1	40 대	F-1	F-4	당사자
2	30 대	F-1	F-4	당사자
3	30 대	미등록	G-1-5	지인
4	40 대	G-1-12	-	당사자
5	40 대	G-1-6	G-1-6	당사자
6	20 대	G-1-6	G-1-6	당사자
7	30 대	미등록	-	당사자
8	30 대	G-1-81	-	당사자
9	-	F-1	F-4	종사자
10	20 대	G-1-5	G-1-5	지인
11	-	G-1-5	G-1-5	지인
12	10 대 (아동학대)	G-1-6	G-1-6	종사자
13	10 대 (아동학대)	F-1	F-6	종사자
14	40 대	F-3	E-7	종사자

15	40 대	미등록	미등록	종사자
16	-	F-6	미등록	종사자
17	-	미등록	-	종사자
18	-	E-9	E-9	종사자
19	-	-	-	종사자
20	-	G-1	미등록	종사자
21	-	G-1	G-1	종사자
22	-	F-6	귀화	종사자
23	-	귀화	F-6	종사자
24	-	미등록	미등록	종사자
25	-	D-2	E-9	종사자

3) 사례별 피해상황

사례 A

A는 3년 전 가정폭력 상황으로 집을 나온 후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A를 걷어차거나 머리를 잡고 끌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물리적 폭력을 가했고, A에게 일상적으로 화를 내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언어폭력과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A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등 정서적 폭력을 가하였다. A는 당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한국어도 할 줄 몰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집을 나와 고시원에 머무르다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해 살고 있다. 체류자격 연장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협조하지 않아 체류자격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편이 아이와 연락을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으며, 남편의 협조 없이도 체류자격 연장을 하고 싶다. 자립을 위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례 B

B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가족들은 모두 본국에 있기에 문제가 생겨도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다. 또한 커뮤니티가 좁아서 자칫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다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정보가 없었다. 한국어도 모르고, 가까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다. 남편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새로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자립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편에게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벗어나 살 수 있는 공간, 일자리, 아이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 C

C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다. 남편은 아이들이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을 모두 던졌고, 피해자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다가 다쳤다. C는 센터에 도움을 구해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남편은 접근금지결정을 받아 분리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매달 방문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도 대응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체류연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 또한 커뮤니티에 소문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사례 D

D는 약 5년 전부터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였다. 남편은 D에게 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각한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으며, D와 본국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집에 CCTV를 설치하며 감시하는 등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 D는 당시 쉼터에 거주하였으나, 아이 출산 후 쉼터의 권유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이어지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D는 다시 집을 탈출해 다른 쉼터로 피했고, 이후 같은 상황의 지인과 거주지를 잡고 아이를 양육해 왔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아이 어린이집 비용, 집 월세 부담 등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체류자격 연장의 어려움이 있다.

사례 E

E와 E의 자녀들은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당한다. 이혼을 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본국의 가족들 상황도 어렵다. 본국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혼경력이 있으면 가족들 모두가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사례 F

F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 F는 지인의 도움으로 아이와 함께 피신하여 한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쉼터 환경(숙식, 통역, 단속과 규칙)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독립해서 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남편은 F의 SNS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력자가 누구인지, 여성이 현재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했었다. 남편은 F가 가정폭력피해를 한국단체에 알린 것을 알고 본국으로 귀국했다. 남편의 설득과 한국에서 독립하기 어렵다는 F의 판단으로 F도 결국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 다시 남편과 다시 같이 살게 되었다.

사례 G

G는 2016년경부터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였다. G의 남편은 지속적으로 바람을 뺐고, G와 G의 자녀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언어폭력을 가하였다. G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찾아와 G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요구하였다. G는 당시 고소를 취하하고 쉼터에 거주하거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를 구하였다. 이후 남편을 용서하고 함께 거주하였으나, 2018년부터 남편은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계속 바람을 피며 당시 임신한 G에게도 성병을 옮기는 등 폭력·학대가 이어졌고, G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G는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다.

사례 H

H는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H의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며 H와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하고 있지만, 가정살림과 자녀양육은 방임하고 있다. H와 자녀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전혀 돌보지 않고, 일을 나가지 않을 때에는 외출하여 유흥을 즐기는 등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지내는 생활이 힘든데, 본국에서처럼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어서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를 돌봄기관에 맡길 수 있으면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남편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여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남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마련이 되면 좋겠다.

사례 I

I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 I의 아버지는 종교적으로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으로 I가 히잡을 쓰지 않는 것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I가 이를 무릅쓰고 학교 마친 후 다른 활동을 하다가 늦게 집에 가거나, 아버지에게 대들거나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I를 때리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I는 집을 나와 학교와 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되어 시설에 입소하였다. 그러나 시설은 장기간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었고, 장기쉼터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학을 갈 수 없었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 다닐 수는 있었으나, 형제들이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기 힘들었다. I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혼자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I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I는 집으로 돌아간 후 1년 간 아버지, 첫째 언니와 이야기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등 힘든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다. 법원에서 아버지에게 상담을 받도록 결정하여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있다.

사례 J

J의 어머니는 J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해왔고, 2021년 J가 밖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발로 J의 머리를 때리고 핸드폰 줄로 손을 묶는 등의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다. 단체에서 이를 발견하여 어머니에게 경고하였는데,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J를 끌고 가려는 상황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J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자 했으나,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여러차례 진료가 거부되었다. 서울에 있는 임시쉼터에 거주하였으나 단기 쉼터로 오래 머물 수 없었고, 경기 지역의 아동보호쉼터로 이동하여 지내고 있다. J는 새아버지가 한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소득수준 기준이 안 되어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쉼터를 찾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의 학교로 전학하여 다니고 있고, 쉼터에서 J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어머니는 상담을 받고 있으나, 상담이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교육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J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으로의 복귀를 두려워하고 있다.

사례 K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면 아버지는 K와 다른 자녀들을 학대하였다. 아버지가 딸들을 괴롭히자 아들인 K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를 밀었고, 화가 난 아버지는 K를 고문하는 자세로 묶은 뒤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다. 어머니는 사건 발생 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의 협박으로 다시 합치게 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 받을 비난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후 어머니가 본국에 간 한 달 사이 아버지는 다시 K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라이터로 머리를 지지거나 펜으로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어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당시 K의 동생이 학교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고, 선생님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을 보호하였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와 분리되어 임시쉼터에 거주하였다.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아버지와 분리결정이 났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아버지는 그 사이 잠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 두렵다.

사례 L

L은 이미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와 가족 간 소개로 혼인한 후 단기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L이 한국에 입국하자 남편은 L을 폭행하고 강간하였으며, 휴대폰으로 L의 나체 동영상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L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L은 단기체류자격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시도했지만, 출입국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L의 남편은 전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짓을 저질러 전 배우자 역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가해자인 남편의 체류를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피해자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

사례 M

M은 본국에서 배우자와 혼인한 직후 배우자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였고, 자녀를 출산하여 15년째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 혼인생활 도중 배우자의 폭력이 있었지만 M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는 M과 사이가 틀어지자 M 몰래 본국 법원에 재판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였다. M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였지만 배우자는 M이 체류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M은 동반비자로 체류하고 있어 더 이상 체류자격을 가질 수 없었고, 자녀는 F-3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지만, M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었다. M은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으나 이후에는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

사례 N

N은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다. 미등록인 상태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하였고, N도 이에 맞대응하여 배우자에게 기기를 던져 배우자도 상해를 입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내국인이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을 사안임에도 경찰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N과 배우자는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도중 미등록 체류상태임이 드러나 출입국으로 연계되었는데, N은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 귀가조치 되었지만, 배우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가 보증금을 납부하여 보호일시해제 되었다.

사례 O

O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같은 국적의 미등록 체류상태인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동거하였다. 배우자는 O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O는 고막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O는 미등록 체류자인 배우자를 신고할 경우 배우자가 강제퇴거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고 병원 치료만 받았다. 6개월 후 배우자는 술을 마신 후 또 다시 O에게 술병을 던지고 O의 휴대폰을 부수는 등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O는 부상을 당하였다. O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배우자는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O가 미등록 체류자임이 확인되자 출입국으로 연계하였는데,

당시 코로나 19로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히자 출입국은 출국 보증각서를 받고 배우자를 풀어주었다. O는 쉼터입소를 원하지 않아 원래의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는데, 출입국에서 풀려난 배우자가 집에 찾아올까봐 두려웠다. 또한 같은 국적의 배우자가 본국에 있는 자녀 등 가족에게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례 P

P는 한국에 체류하던 중 같은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동거하다가 임신하였다. 배우자는 이미 본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P를 만났고, P가 임신하자 P를 버리고(방임) 본국으로 도망갔다. P는 장기간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었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며 자립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는 없었다. 부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녀는 건강보험, 어린이집 비용 등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P는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사례 Q

Q는 한국에 체류하던 중 같은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임신과 출산을 하였다. 배우자는 Q에게 아기를 요구하였으나 Q는 이를 거절하였고, 배우자의 방임으로 Q는 싱글맘이 되었다. Q는 출산한 자녀의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었고, 출산 후 한 달 간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1개월이 경과하자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Q는 자녀를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다.

사례 R

R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한국에서 자녀 3명을 출산하였다. R은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는 등의 물리적 폭력을 당했지만, 배우자가 미등록체류 상태여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배우자의 폭력이 지속되었고, 하루는 자녀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하였다.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아버지는 도망갔고, 자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없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별거하고 있고, R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아 일을 하며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사례 S

S는 배우자와 함께 체류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자주 다툼을 하였고,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체류가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종속되어있어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사례 T

T는 OO(국가)에서 배우자와 혼인하였다. 배우자는 한국에 입국한 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게 되자 T를 초청해 함께 체류하였다. T는 배우자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고, T는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였지만 배우자는 T가 한국어를 배울 수 없게 하고, 장을 보러 가지도 못하게 하며 집에만 있게 하였다. 집에도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에 위치추적을 하는 등 T의 일상을 감시하였다. 결국 T는 견디지 못하고 출국하였다.

사례 U

U는 한국에서 귀화한 후 같은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다. 자녀를 출산한 후 배우자는 U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시켜 U가 외도한 것처럼 꾸미거나 칼을 가지고 U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례 V

V는 같은 국적의 배우자와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체류하였다. 배우자는 본국에 이미 혼인한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한국에서 V와 동거하였고, 자녀도 출산하였다. V는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지만, 배우자는 신고하면 V의 본국의 가족을 해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미등록 체류로 인해 추방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배우자를 신고하지 못하였다. V의 배우자는 집 보증금을 가지고 본국으로 출국하였고, V는 지인의 집에 거주하며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사례 W

W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같은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출산하였다. 배우자는 본국에 이미 혼인한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W와 동거하였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배우자는 W와 자녀를 두고 도망갔다. 유학생은 취업을 할 수 없어 W는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본국의 부모님은 허락 없이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것에 분노하여 가족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례 X

X는 결혼이민 체류지위로 체류하다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A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다. A국적의 배우자 사이에 자녀도 출산하였는데, 위 배우자는 술만 마시면 X를 폭행하였다. X는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배우자에게 말로만 훈계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X는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계속되는 폭행에 무서워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후 X는 B국적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다. B국적의 배우자는 X와 X의 자녀를 폭행하였다. X의 자녀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국적의 배우자로부터 전기줄, 옷걸이 등으로 팔과 다리를 종종

맞았다. X 는 B 국적의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B 국적의 배우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되었다. X 는 혼자서 4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복지관, 구청, 성당, 아동보호기관, 이주여성상담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례 Y

Y 는 한국에 체류하던 중 같은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동거하다가 임신하였다. Y 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였지만, 배우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Y 는 출산한 이후에도 출산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주여성쉼터의 지원으로 자녀의 출생신고와 출국준비를 진행하였다.

4) 소결

총 25 건의 가정폭력 사례 가운데 5 건은 아동학대 사례였다. 인터뷰한 사례들 모두 국적,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물리적·정서적·언어 폭력피해를 겪었다. 본국을 떠나 있어 가족·친구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같은 국적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 낙인의 두려움은 피해상황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찰신고, 쉼터 연계 등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언어소통·정보부족 문제를 겪었다. 가해자의 체류자격에 종속된 체류지위로 있는 경우, 미등록 체류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등에서 심각한 폭력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이하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 대응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보고(3. 대응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4. 실태조사를 통해 본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정책제언(5.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실태조사 결과: 대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본 장은 사례들을 통해 외국인 가정내 이주여성과 아동들이 가정폭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사례의 외국인 가정내 이주여성들은 가족구성원들이 체류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국적자가 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조건과 다르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가해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본인과 자녀의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처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 지원체계의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들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1) 체류 연장 및 체류자격 취득에 대한 불안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 신고가 체류상태 유지에 영향을 미쳐 가족과 본인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본인이 체류자격을 신청하였던 주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여성들은 배우자의 체류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체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난민신청의 주요 사유가 남편이 처한 문제 때문인 난민신청자의 사례, 재외동포 체류자격자의 가족으로 체류하는 사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해당 사례의 여성들은 본인의 체류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남편의 체류의 안정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에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1) 난민신청(G-1-5)체류자 사례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난민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주여성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남편의 난민신청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많이 폭행당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신고하면 아빠가 난민신청비자인데 안 될까봐. ... 왜냐하면 남편이. 난민신청 중이잖아요, 잘못 이야기하다가 남편 비자 안 나오면 남편도 안되고 본인도 안되고. <사례 S>

(2) 재외동포 체류자(F-4)의 가족체류자(F-1) 사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가족인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F-4 체류자격인 배우자가 있어야 본인이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또 체류비자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폭력을 신고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아래 사례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나서도 체류자격을 연장을 위해 가해자와 다시 만나야만 했고, 가해자인 배우자가 체류연장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체류자격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조사과정에서 남편의 지시를 따라 그의 가해사실을 축소하였다.

내담자도 비자 연장이 필요하고, 남편이 비자가 연장이 되어야 내담자도 연장을 할 수 있으니 경찰에 진술을 하지 말라(고 남편의 누나가 말했어요). ... 이렇게 많이 때렸다고는 진술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이 칼이나 가위를 잡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은 경찰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진술을 하러 가는 상황이면 남편이 내일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묻고, 또 진술의 내용에 대해 지시하기도 했어요. ... 남편 역시 자신 없이는 비자 연장이 안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하며 내담자에게 자신을 과시했어요. <사례 D>

F-1 체류자격을 소지한 이주여성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연장을 할 때마다 남편의 신분증과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던 경험은, 가정폭력을 대응하고 난 후에 남편이 서류제출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체류자격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옛날에 남편 통해서 연장할 때는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상담소) 도움을 처음에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본인의 신분증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남편이 그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 그런데 다음번에 연장은 해줄지 많이 걱정됩니다.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례 A>

2)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가정폭력을 신고한다면, 이로 인해 본인과 자녀들이 함께 한국에서 강제퇴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 언어와 문화가 더 익숙한 자녀들이 있을 경우 자녀들과 함께 강제퇴거가 된다면 자녀들의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고하면 본인이 불법이라서 신고하면 본인이랑 아이들까지 잡혀갈까봐. 이 분 같은 경우는 큰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본국말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본 적 없잖아요. 한국에서 살아서 아이들은 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해요. <사례 R>

이주민으로서 강제퇴거가 한 사람의 인생을 큰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 걱정은 미등록인 배우자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졌다. 본인의 신고로 인해 배우자가 추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미등록이다 보니까 신고하면 이분이 본국으로 추방(강제퇴거) 된다는 게 걱정돼서 처음에는 용서 아닌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도 앞으로 잘하겠다 사과도 해서 용서를 해줬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술병을 던지고 핸드폰도 부셔서 자기 손도 다쳐서 경찰서에 와 있다고요 <사례 O>

3) 자녀의 성장에 대한 걱정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가정폭력에 대응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한국의 언어와 생활에 이미 익숙해진 자녀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생활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난민의 경우 자녀가 본국에 돌아가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아래 사례는 자녀가 본국의 언어를 잘 하지 못해서 본국에 돌아간다면 학업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커요. 아이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모국어를 거의 몰라요. 할 수 있는 모국어가 거의 없고, 본국에 가더라도 학습을 따라가지 못 할거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미 한국의 생활에 적응해 왔고, 모국어도 못해서 어떻게든 한국에 남아서 아이와 함께 자라는 모습도 보면서 남아있고 싶어요. <사례 A>

본국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본국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안전과 성장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국에 지금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면 본국에 돌아가면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 아이에게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생각해도 한국에서 살아야 해요. 본국에서는 나도 나의 아이도 안전하지 않아요. 나는 한국이 안전하고 아이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B>

4) 경제적 자립 및 독립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

가해자인 배우자의 경제적 소득으로만 생활해온 여성들의 경우 남편과 분리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다. 언어,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등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해자는 이 점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도 했다.

아이 3 명인데 신고하면 남편 잡혀갈까봐, 자기 혼자 아이 키울 수 없어요. <사례 O>

중요한 문제는 한국에서 아랍 여성이 남편과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아마 돈을 끊어 버릴 거다. 그러면 여성이 어떻게 사냐, 직업은 어떻게 구하고 어디로 가나... 그 때도 생활비를 달라고 했는데 내가 왜 너 돈 줘야 하나, OO(국가)에 있는 부모한테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서포트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중략) 때때로 나는 돈이랑 일도 없어서 힘이 없게 느껴서 그래서 내가 속이게 돼요. 일주일 동안 그랑 얘기 안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주에는 얘기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누가 나와 집 가족(아이들)에게 돈을 주나... 줄 사람이 없어요. <사례 B>

한국에서 취업허가를 받기에 제약이 있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인도적체류(G-1-6)의 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독립이나 정부의 지원을 상상하기 어려워했다.

남편에게서 떠나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져요. (중략) 외국 여성이 혼자 한국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혼자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성이 처한 비자로는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요? 적어도 200 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8>

여성들이 한국에 올 때 애초에 남편이 데리고 와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립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남편이 돈으로 여성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게 항상 문제였어요. ...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을 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나는 한국어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또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자립할 수가 없어요. <사례 B>

5) 가족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

이주여성들이 배우자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에는 자녀나 친정 가족들에 대한 위협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가해자인 배우자들은 폭력에 저항하는 이주여성의 대응을 무마시키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위협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이주여성들은 본인이 배우자와 갈등을 지속할 경우 자녀에게 위해가 가해지거나 또는 자녀를 더이상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가해자인 배우자와) 다시 합친 이유는, 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 대해 감정이 너무 안좋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아이가 체포된 적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나를 협박했어요. 아이를 풀어주기를 바라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나를 협박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아이에 대한 신고를 철회했어요. <사례 K>

그 일(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남편이 혹시 아이를 나한테서 뺏어갈까봐 유치원에서 남편이 오면 애 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안전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략) 나 말고 내 다른 친구 경험도 있는데 부인한테 화가 난다고 애들을 때린 남편도 있어요. <사례 B>

여성들은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성의 친족 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할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배우자들은 여성에게 본국에 있는 여성의 친족들에게 보복하거나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여성들은 실제로 자신의 물리적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본국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해야 했다.

오래 사귀다 보니까 본국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여성이 본국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아직 미성년 자녀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심이 두려워가지고 신고를 할까 말까 하는데 (중략) <사례 O>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느낀 것은, 남편이 나를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OO(본국)에 있는 오빠에게까지 협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나와 아이들을 해코지할 것 같이 말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무언가 일을 벌일 것처럼 말했어요. 또한, 남편은 OO(본국)에 가서 친척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어요. 이는 저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협박으로 느껴져,

OO(본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로 남편이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어요. <사례 D>

6) 한국사회에서의 고립, 언어, 한국생활과 법률에 대한 부족한 접촉

배우자들이 이주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외부의 소통을 막는 사례들이 있었다. 배우자들의 이런 의도적인 단속은 이주여성들을 한국사회에서 고립되도록 하기에,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고,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내기도 어려웠다. 또한 한국사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하거나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아래의 사례는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고립되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휴대폰도 없고 집을 떠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여성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된다.

전 배우자는 경찰도 부르지 않았어요. OO(종교권) 남편들은 대부분 아내가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OO(피해자)의 경우 다른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외부의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차단해요. 외국에서 데리고 오고 집에만 가둬 둔 채 다른 세상에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해요. 밖에 혼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례 L>

한국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은 한국사회에서 남편에게 독립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특히나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주여성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알지도 못하고,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생각해내기가 어려웠다.

만난 건은 OO(국가) 피난민 부부예요. 남편은 F-4, 여성은 F-1 인데 여성이 심하게 다쳤고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성은 전화요금도 못 내서 외부에 전화도 할 수 없었어요. 적십자에서 연결해 주어서 생계비, 의료지원을 받았어요. 남편은 접근금지로 집에 들어올 수 없고 여성과 아이들만 집에 있어요. ... 남편과 살 때는 전화가 안되고 인터넷이 안되서 일자리 찾을 수 없었어요. 생계비 지원으로 전화기를 다시 사용하면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매달 방문하고 있어요. <사례 C>

신고하지 못했는데,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었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신고전화도 모르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경찰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후에 친구와 함께 신고하려고 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신고 전화번호 몰랐나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지금도 몰라요. 당신(통역)이 저한테 알려줬는데도 몰라요, 기억이 안나요. <사례 A>

때문에 아래의 사례는 한국사회에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집 안에서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남편이 와서 때리고 애들은 무서워하고, 어떻게 여성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나는 남편이 집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략) 어떻게 나와 나의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전화? 어떻게 전화하는지도 모르고 단체에 연락?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중략) 나는 어떻게 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는지 남편이 집에 어떻게 오지 못하게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 문을 잠그는 거 말고는 알지를 못해요. <사례 B>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고립되어 자신을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경우, 본국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OO(본국)에서는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지, 경찰에 개입해서 페널티를 주지 않아요. 오직 여성이 이혼을 원할 때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법원가서 이혼하라는 결정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서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거예요. 나도 (오늘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인터뷰 8>

7) 친족 및 커뮤니티의 비포용성과 배척

이주여성의 친족과 한국 내 이주여성이 속한 커뮤니티는 여성이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여성의 가족들은 이주여성의 문제제기와 혼인관계의 단절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커뮤니티 역시 큰 문제를 만들지 말고 참고 지내라고 압박을 가했다.

또한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해서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커뮤니티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내쫓으려고 해요. OO(피해자)의 사례에서도 OO(피해자)가 집을 탈출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여러 사람들이 OO(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사건을 취하하라고 종용했어요. 얼굴에 크게 상처가 남거나 하지

않는 한, 모두가 맞고 있으니 그냥 지내라라고 000(가해자)의 가족이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인터뷰 9>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친족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이주민 커뮤니티가 본국에서의 가족 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별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남편을 떠나고 배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국의 원래 가족들이 돌봐주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인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종교상으로 계속 결혼한 상태로 지내게 해요. 00(피해자 이름)의 경우도 그 가족이 00(피해자 이름)이 결혼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살해할까봐 걱정이었어요. 매년 천 명 정도의 아내들이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어요. <인터뷰 9>

처음 사건 발생시에는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 커뮤니티 사람들이 심하게 비난해서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내에서 비난이 심해요. 여자분이고, 자녀의 대부분이 여자라는 이유로 안 좋게 보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왕따당하는 것도 매우 무서워요. <사례 K>

여성들은 한국 내 본국 이주민들의 공동체(커뮤니티)에서 '가족을 신고하는 여성'이자 '나쁜 여성'으로 낙인 찍히고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공동체가 한국사회의 법률이 아닌 '가족내의 문제'로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00(국가) 공동체는 항상 나에게 왜 00(가해자 이름)을 경찰에 보내야 하냐고 물어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겠어요? 그들은 '내'가 00(가해자 이름)에게 '나쁜 기록'을 '줬다'고 말해요. 내가 '나쁜 여자'야. 좋은 여자는 절대로 남편을 상대로 경찰을 부르지 않아. 이거예요. 남성은 그들의 집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성에게 해야 해요. 여성은 절대 바깥으로 남성에 대해 드러내면 안 돼요. 드러내면 그 여성은 나쁜 여성이에요. 그들의 문화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사례 G>

나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공동체는 내가 경찰을 부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 그들은 항상 물어봐요. 그가 처벌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00(국가) 공동체 때문에, 그들은 그의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의 케이스를 취하해야 한다고 했고, 공동체 내에서 가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난 케이스를 취소했어요. 그 이후로도 그는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사례 G>

8) 폭력에 대한 인식

이주여성이 자신의 폭력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기 전까지,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아래 사례에서 여성은 CCTV 를 통한 배우자의 감시, 강압적인 부부성관계에 대해 괴로워하면서도 폭력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

저희는 계속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데 부부가 무슨 성폭력이나.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네. 그리고 내가 성폭력이라고 하면 과연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성폭력이라고 말하면 믿어줄 사람이나 있냐 그러는 거죠. 본인 말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남편의 성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 때문이 아닌 거죠. 경제적, 정서적? CCTV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 엄마를 바보로 만드는 거죠. 엄마는 아무 힘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 아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죠. <사례 D>

9) 경찰(공공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응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미온적인 대응을 했을 때 이주여성은 경찰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폭력 가해자인 배우자의 경우도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하게 되었다. 다음의 사례에서 여성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였고 경찰이 집에 왔지만 때리지 말라고 주의만 주고 돌아갔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은 이후에 배우자의 추가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제가 경찰을 데리고 왔어요, 집에. 신랑 잡아가라고 했는데 안 잡으러 가요 경찰이. 신랑 불법이니까 잡아 가라고 했는데 안 잡아가요. (때린다고 신고한게 아니고 불법이라고?) 때린 것도 신고하고, 불법이라고도 했어요. 경찰에 택시타고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우리 신랑이 저 때렸어요, 불법도 맞아요. 경찰이 신랑 이름 같은 거 적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 했어요, 마누라 다시 때리지 말라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신랑 다시 안 때린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하니깐 그냥 갔어요?) 네. ... 신랑한테 외국인등록증 달라고, 제가 등록증 있는데 불법이라고, 지금 애기있어서 봐주세요. 신랑이 그렇게 말해요. 마누라한테 다시는 안 때릴게요. 근데 말 안 들어요. 술 마실 때 마다 때리고 해요. 술 안 먹으면 괜찮은데 술 마시면 엄청 무서워요. <사례 X>

다음 사례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 배우자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없이 출입국으로 연계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된 경우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공항이 막혀 남성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보호소에서 나오게 되어 여성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112 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조사도 받고 근데 경찰들이 (초기)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풀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풀어줬어요. 여성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후에 경찰이 잠복해서 남자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가정폭력이라서 그런지 미등록 외국분이라 그런지 처벌을 안 하고 바로 출입국으로 넘겼어요. 출입국으로 넘겼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가 또 심하다 보니까, 그때 본국에 한참 격리 3-4 주 하고 이럴 때라서 본국으로 추방은 못하고 언제까지 귀국한다는 보증서를 적고서는 외부로 나왔죠. 여성은 이제 거기서 두려운 거예요. 혹시 자기 찾아올까 봐... <사례 O>

10) 외국인으로서 이혼의 어려움

(1) 절차적 및 경제적 어려움

이주여성들은 폭력적인 배우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들을 호소했다. 특히 타국에 있으면서 본국에 이혼신청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코로나 문제로 OO(본국)에 돌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OO(본국)에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돌아가야만 한다고 했고, 위임하더라도 안된다고 했어요. 정상적인 채널로는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소송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직접 가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변호사 상담도 했는데 위임해서 소송하는 비용이 1 천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소송기간도 몇 년 걸린다고 했고, 최소 2 년 이상은 걸린다고 들었어요. <사례 A>

(2) 이혼을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본국의 문화

또한 이주여성이 속한 문화권이 이혼을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여성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실행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혼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본국에 있는 가족들 상황이 좋지 않고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라고 해요. 또한 본국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일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본국에는 일거리도 많지 않다. 특히나 여성이 독립할 정도로 가질 수 있는 일거리를 찾기도 어려워요. 남편과 이혼했다고 하면 가족 모두가 shame 을 안고 살아요. <인터뷰 8>

아래의 사례에서 여성은 자신의 친족들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라고 돕기 보다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증용할 것이기에 이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한국에서 나는 독립된 삶을 살고 있는데, OO(본국)에 돌아가면 나는 가족집에 있다가 내 가족들은 실제로는 이혼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이고 그럼 나는 남편의 가족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을 수도 있어요. <인터뷰 8>

11) 가족내의 아동학대

가정폭력은 비단 배우자와 이주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다. 아동 역시 폭력과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양육자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체벌을 아동학대라고 인식하기 않아 지속적인 체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이니까 체벌하지 않고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도 핸드폰 줄로 바닥 내리치는 거를 많이 해요. 한국이니까 한국사람한테만 체벌금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주 넘기게 되는 상황이에요. 명령이니까 상담은 받아도 시간만 채우는 느낌 <인터뷰 13>

다음의 사례는 한 가정 안에서 배우자의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그리고 부부의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이 모두 중첩되어 있었다. 아동은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에서 분리되었는데,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을 신고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결국 해당 아동은 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결정을 해야만 했다.

아동이 우울증이 심했어요. 가족한테 죄책감. 혼자 어떻게 살지,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혼자 남는다고 생각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어요. 쉼터 안에서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줬어도 다른 가족도 없고 한국에서 부모님 밖에 없는데 부모님과 등지면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례 J>

또한 아동이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 어머니가 아동의 신고를 제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나는 OO(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그(아버지)를 처벌하지 말라고. 그를 처벌하면 그가 추방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책임은 나와 네가 지게 된다고. 우리가 그를 돌아가게 한 것이 된다고. <사례 G>

12) 그 외 여성들이 처하는 가정폭력

연구 과정에서 가정폭력이 배우자 사이, 부모와 자녀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들에 의한 가정폭력의 유형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정폭력이 있을 때 친족의 도움을 받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권에서는 부부사이의 가정폭력이 아니라 가족내의 남성 구성원들에 의한 가정폭력이 있을 때 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증언을 해주기도 했다.

또한 중혼이 허락된 국가에서, 배우자가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중혼을 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사례도 있었다. 본국에 있었으면 인적 네트워크들을 통해 남성이 중혼을 시도하는 사실을 쉽게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중혼을 하는 것을 쉽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한국정부에서 남성의 중혼한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을 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아버지나 남자 형제로부터의 폭력은 더욱 더 해결하기 어려워요. <인터뷰 8>

OO 국가들은 남성이 두번째 결혼을 해도 어떤 것도 체크하지 않아요. (중략) 그래서 결혼 등록을 너무 쉽게 해요. OO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여성들은 어떤 남자와도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례 B>

13) 쉼터 찾기와 이용의 어려움

이주여성들이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서 분리되어 거처할 공간이 필요하다. 본국에서와 같이 친족의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한국사회에서 상담을 맡은 기관들은 한국에서 운영되는 쉼터를 먼저 찾아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래 사례는 여성과 자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쉼터를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따로 나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했다.

당시에 쉼터 등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쉼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알아보기로 했고 실제로 이사를 했어요. <사례 J>

또한 한국사회에서 자립이 어려운 이주여성들의 경우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3개월이 최대인 임시쉼터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 결국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장기쉼터를 찾아야 했다.

서울 임시쉼터 같은 곳으로 갔어요. (중략) 그 후 3개월이 넘었어요. 갈 수 있는 장기 숙소가 없고 다 거절되었어요. 이후 장기쉼터로 OO(지역)에 있는 숙소로 가서 지내고 있어요. <사례 J>

또한 한국에서의 여성쉼터가 위치에 대한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입소할 때 관행적으로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이 소수언어권으로서 상시적인 통역 자원을 확보되지 못한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심한 고립감과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14) NGO 상담 요청과정에서의 어려움

공식지원체계의 공백으로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를 제외한 상담은 NGO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아래의 사례에서의 이주여성은 부부의 난민신청을 조력하고 있던 NGO로부터, 부부간의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도움을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움을 요청했던 NGO가) 가해자도 같은 난민신청자이니 한 명만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른 피해자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난민신청자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사안임에도 가해자의 난민사건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하지 않았어요. <사례 E>

한국과 같이 난민인정률이 낮은 나라에서 난민으로서의 체류지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난민들은 관련 주제의 활동을 하는 NGO를 통해 난민심사 및 법원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로서의 부부의 이해관계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지점에서 의지하고 있던 NGO로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거절당한 경험은, 이주여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에서의 대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들이 처한 체류지위, 경제적 예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자원의 부족, 본인이 속한 이주민 커뮤니티의 영향, 한국사회의 지원 제도의 공백, 접근 가능한 지원 단체들의 한계들이 중첩되어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실태조사 사례들을 통해 한국사회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4.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도적 문제

1) 지원체계(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쉼터, 가족센터)의 제한적 역할

(1) 현행 제도

2022년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로는 핫라인 기능을 포함하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상담 기능의 이주여성상담소, 시설보호기능의 이주여성쉼터가 있다. 전국 시군구마다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센터에서도 일부 사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A.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로 24시간 13개 다국어 상담·통역을 제공한다. 중앙센터 및 6개의 지역센터가 있다. 폭력피해 긴급지원 및 사후 관리, 종합생활정보 제공, 생활통역 및 3차 통역 서비스, 가족상담 및 부부 상담, 변호사 상담을 제공한다.

B. 이주여성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로 전국 9 개소가 있으며,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가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 기반 피해 이주여성을 상담한다.

C. 이주여성 보호시설 (쉼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로 전국 28 개소가 있다.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주와 생활 지원을 한다.

D.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로 전국 시, 군, 구마다 있다. 2022년 기준, 가족센터 안의 다문화가족 지원 형태로 208 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으로 23 개소가 있다.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및 취업 교육,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상담 및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한다.

한국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체계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다문화가족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합한 가족을 말한다. 외국인 가족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이슈를 공식 지원체계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큰 이유 중 하나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 3 조 및 제 4 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쉼터가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한국남성의 외국인 배우자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책 지원대상이 결혼이주여성 중심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 지원체계 모두 이용자는 결혼이주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출발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가족의 가정폭력을 다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본 연구의 23 가지 사례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의 지원을 경험한 사례는 없었다.

외국인 가족의 가정폭력을 전달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국적자 중심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 국적자는 특정한 대상에 한해 지원한다. 한국인의 배우자이거나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기본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전달체계에서 외국인 가족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할 수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제도와 정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족내 피해 이주여성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직접 수혜 형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정보제공과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 쉼터에 입소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태조사를 통해 본 문제

A. 제도가 미비한 환경에서 행정 절차 지원

특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은 가정 폭력 피해와 관련된 정보들이 낯설 수밖에 없다. 상담소와 쉼터는 이주여성들이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거의 유일한 지원이기도 하다.

신생아 출생등록, 여권 발급 지원으로 출국 지원

<사례 P>는 유학비자로 왔다가 미등록 상태가 된 여성으로 같은 나라 출신 유부남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임신 사실을 알자, 상대방 남성은 자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혼자 출산을 하고 쉼터에 입소한 여성은 쉼터에서 기본적인 생활지원을 받았다. 한국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 여성은 출국을 결정하였다. 출국을 위해 필요한 신생아의 출생 증명서와 여권의 발급 절차는 복잡했다. 쉼터에서 대사관과 연결, 관련 서류의 작성과 발급을 지원하였다.

<사례 Y>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외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OO(국가) 출신 미등록 체류 여성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만에 쉼터에 입소하여 신생아 모자가 생활 지원을 받았다. 이 여성은 본국으로의 출국을 희망하였다. 쉼터에서는 OO(국가) 대사관에 동행하여 아기 출생증명서, 여권 발급 등을 지원하고, 서류가 마무리되자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인터뷰 14>은 신생아 출생 등록과 출국 지원 사례를 언급하였다.

병원에서 출생할 때 출생증명서를 영어로 발급하거든요. 거기에 '부모' 란에 '부'가 없어요. 그러면 미혼모인 엄마 자식으로 성을 따라서 서류를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전자 검사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요구하지 않아요. 최근에 지원했던 분들은 거의 다 엄마 호적에 올렸고, 거의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외국인 여성의 임신, 출산은 제도적인 미비로 지원이 쉽지 않다. 한국의 출생등록은 한국인과 법률혼이 되어 있는 외국인 여성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 남성이 외국인이거나 법률혼이 아닌 한국 남성일 경우, 아이의 출생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위 두 사례처럼 친부에 대한 인지가 없거나 친부의 방임으로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은 더 어렵다. 이런 경우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사관과의 소통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사관마다 과정이 다르고 태도도 다르다. 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각국의 대사관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아이의 출생등록과 여권 발급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이 몇 개월씩 소요되곤 한다.

미등록 아동 비자 신청 지원

<사례 R>은 같은 나라 출신의 부부와 자녀 3 명의 가족이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미등록 체류 상태로,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지속되었다. 상담소가 개입하여 가해자를 분리조치하였다. 상담소는 가정폭력 관련 지원 외에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획득 절차를 지원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에 따른 절차를 지원한 것이다.

아이가 3 명인데 막내는 아직 학교 가기 전이라서 막내는 안되고 큰 애 2 명만 신청해줬어요. (벌금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잘 얘기해서 깎아줬는데, 그래도 벌금 500 만원 내라고 해서, 내담자가 지인 통해서 빌려서 내고. 아이 비자도 나오고, 그로 인해 엄마 비자까지 나왔어요.

본국에서 밟아야 하는 이혼 절차

외국인 가족의 가정폭력을 공식 지원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가정폭력과 연관될 수 있는 법률 절차가 한국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례 R>에서처럼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싶어도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이혼을 한국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빠는 연락이 안돼요. (혼인관계가 있던 집이에요?) 네. (그럼 이혼은?) 이혼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본국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B. 접근이 불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이 귀국을 선택한 이유: 불가능한 사회복지 수혜

<사례 P>와 <사례 Y>의 여성이 귀국을 선택한 것은 사회보장체계의 미비와 관련이 깊다. 아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혼자 자녀를 키우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도와줄 친정 가족의 초청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도 미등록 아이들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할인을 조금 받는 경우 정도 있었죠. 그래도 한국 아이들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어린이집을 다녀야 해요. 시설(쉼터)에 있으면 예방접종 같은 것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어린이집 비용은 힘들죠.

출산 비용 감당하기 어려워 쉼터 입소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Q>의 여성은 OO(국가) 출신으로 유학 비자로 왔다가 미등록 상태가 되었다. 이 여성은 유학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임신을 하고 입국하였다. 상대방 OO(국가) 남성과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혼자 출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버거웠던 이 여성은 쉼터 입소를 통해 출산지원을 받았다.

쉼터 입소 이주여성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에서 생계비를 받을 수 있지만 위 사례의 여성들은 받지 못했다. 모두 미등록 체류 상태로 정부 지원금의 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은 이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2) 피해자 보호시설의 한계점

(1) 현행 제도

A.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제 7 조 및 제 7 조의 2 에 근거하여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로는 쉼터 외에도, 자활지원센터, 그룹홈이 있으며, 폭력피해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피해자들을 2 년의 범위에서 외국인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전국 28 개소가, 그룹홈은 4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직업기술 교육훈련, 취업알선, 동반자녀 보육지원 등을 제공하며 서울에 1 곳이 있다.⁴

B.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출동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처분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때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 15 조에 따른 지자체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동복지법 제 53 조의 2 및 제 52 조 제 1 항 제 4 호에 근거하여 학대피해아동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⁴ 2022 년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503-562 쪽.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 아동에 대상으로 한 별도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인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국적 내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실태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차별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보장시설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 조 제 3 호 및 제 6 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 9 조 제 3 항, 제 19 조 제 2 항).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 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일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 등 외국인 수급권자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 5 조의 2 참조),⁵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외국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도 이와 동일하다(의료급여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제 3 조의 2). 이에 따라 외국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은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및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과 같은 보장시설에 입소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배제된다. 즉, 보장시설에 입소하였다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만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설수급자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기로 있을 수 있는 쉼터를 찾기 어렵고, 쉼터 내 일자리 연계는 F-6 체류자만 가능한 문제

마지막으로 집을 나왔을 때에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신을 쉼터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어요. 당시에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으면 스스로 죽거나 남편이 진짜 자신을 죽이는 선택지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당시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을 하고 집을 나왔지만, 경찰서에 가서 쉼터에 보내 달라고 하니 모든 쉼터들에서 비자 자격으로 인해 오래 있을 수 없다며 거부를 했어요. 임시보호시설 역시 원래는 며칠밖에 머무를 수 없지만, 이처럼 받아줄 쉼터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보호시설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던 와중 서울의 한 쉼터에서 받아줬어요.

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 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이전까지는 쉼터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필요한 돈이 없었어요.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어떤 쉼터는 직접 쉼터에 머무르는 이들을 공장에 내보내기도 했지만 그것은 F6 비자 가진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었어요. 저처럼 F1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하러 갈 수 없었어요. 일에 관련한 온라인 사이트들을 계속 살피기는 했지만, (서울) 쉼터에서 살 때에는 아이를 돌봐야 했고, 쉼터의 원장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사례 D>

미등록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쉼터에 입소하더라도 일자리 연계나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안내하자 피해자가 입소를 포기한 사례

그런데 애가 있으니까, 쉼터 입소하고 싶다고 전화 온 거죠. 쉼터 입소는 가능한데 그거는 지속적, 오래는 아니잖아요. 쉼터 입소해도 아이는 본인이 케어해야 되고, 그러면 쉼터 입소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애는 봐주는 사람 있어야 되고, 그건 누구예요, 본인인데, 그런데 본인은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는 것도 불법근로인데. 쉼터 입소는 가능하지만 오래는 못하고, 입소한 동안에도 아이는 당신이 키워야 된다 알려줬더니 그냥 입소 안 했어요. 그냥 본인의 지인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잠시 맡기고 본인이 직장 알아보고 일하면서 어린이집 맡기고, 본인 돈으로 어린이집 비용 내고, 그렇게 된 사례도 있어요. <사례 V>

외국 국적 아동이라는 이유로 임시쉼터 외 장기적으로 받아주는 쉼터가 없었고, 결국 아동이 집으로 돌아간 사례

(아동학대 신고 이후) OO(지역이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되어 서울에 있는 시설에 입소했어요. OO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숙소는 임시쉼터여서 3개월만 지낼 수 있고, 최대 6개월만 지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아이가 장기적으로 있을 숙소가 필요했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OOO 여성 숙소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3개월 있었던 임시 숙소는 아동학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받아주긴 했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전달한 내용은 아이가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었기 때문에 가족한테 돌아갈 수 없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숙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OOO(기관이름)에 있는 게 어떤지 물어보았고, 학교나 OOO(기관이름)은 접근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갈 수 없다고 전달했어요. 외부인 출입이 불가해서 숙소에 올 수 없다, 대신 어떻게 지내는지 전달해줄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 찾아보겠다고 전달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OOO(기관이름)이 숙소로 지정될 수 없어서 임시숙소에 더 지속하여 지냈어요. 원래 다니던 학교에 다시 다닐 수는 있었는데,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피해아동은 동생들이 맞고 있지 않는지 걱정해서 모니터링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 후 한 번 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다음 숙소로 학대피해아동쉼터, 후원쉼터, 000(기관이름) 등을 고려했어요. 다른 곳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생활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000(기관이름)은 연고자보호로 법원에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숙소 위치가 비밀로 되어야 하는데 주소를 숨기기 어려워서 아동을 보호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부모도 000(기관이름) 위치를 알고 있고요. 그 후에 000(기관이름) 여성 숙소가 어떤지 직원이 보고 가고 판사한테 제출하긴 했는데, 생계, 의식주, 생활비, 학교 등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누가 책임을 맡을 건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례 1>

장기쉼터를 찾기 어려웠으나 다행히 지방에 있는 쉼터에서 받아줬고 의료비 지원도 받은 사례

당시 어머니 F-6, 아이가 F-1 이고 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외국인 아동이라는 이유로 병원을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거부되었고, 결국엔 OO 병원에 갔어요. 이후 OO (지역)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보호조치 해서 저녁 7 시반에 시설로 옮겼어요. 서울에 있는 임시쉼터 같은 곳으로 갔어요. 그 후 3 개월이 지났으나, (수도권 인근) 갈 수 있는 장기 숙소가 없고 다 거절됐지요. 이후 장기쉼터로 OO(지역)에 있는 숙소로 가서 지내고 있어요. OO 아동보호쉼터이고 비공개 쉼터예요. 2021 년 11 월 2 일까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OO 구청이랑 000(기관이름)이 같이 방문해서 아동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어요. 피해아동은 가족 소득 수준이 기준이 안돼서 한국 국적을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쉼터를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임시보호소에서는 전학이 안되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다가 OO(지역)에서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쉼터에서도 본인 혼자만 있어서 장기 결석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임시 숙소는 최대 3 개월이고, 장기 숙소로 가야 전학이 되어서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어려웠어요. (건강보험 관련) 아이가 이가 아팠고, 결핵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때도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 남편, 한국 아동만 의료급여 대상이고, 피해아동만 따로 건강보험료 내는 상황이에요.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어머님한테 잘 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나마 현재 쉼터에서는 다른 것보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이고, 쉼터에서 치료비를 계속 부담하고 있어요. 문화를 고려한 가족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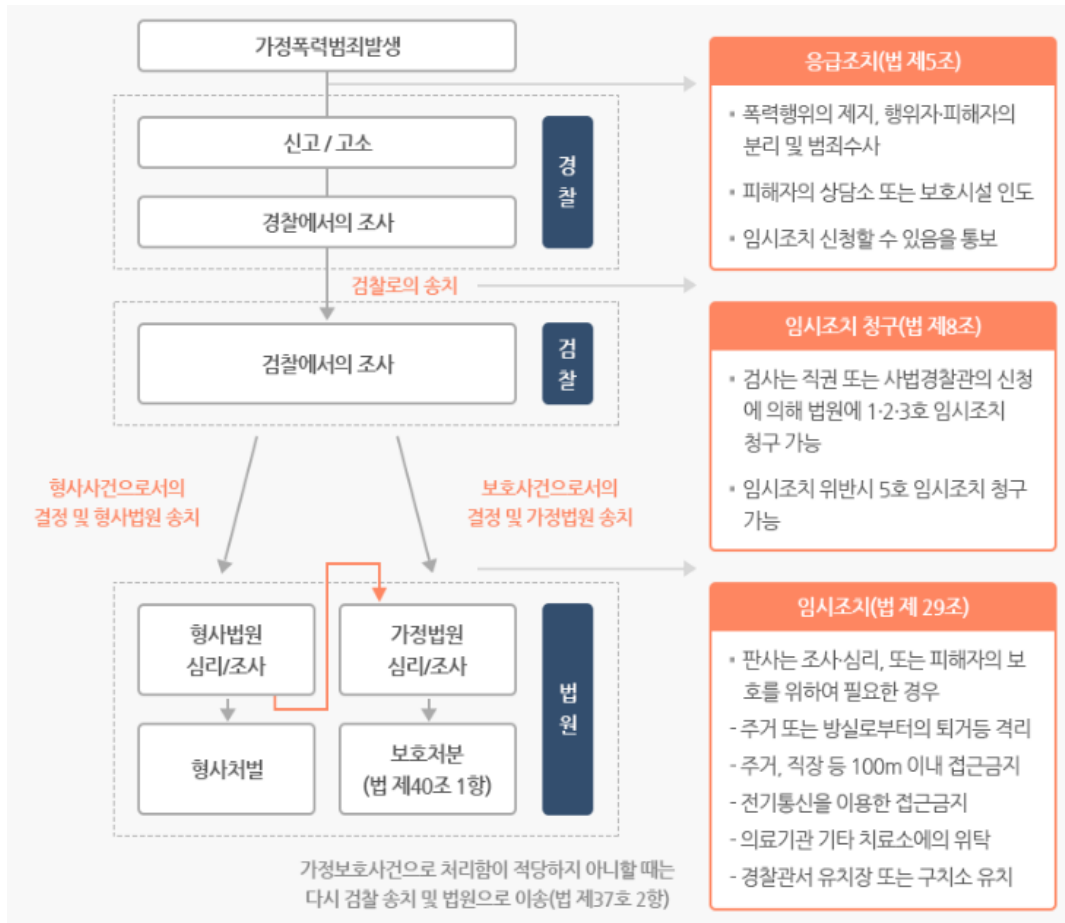
3)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과정

(1) 현행 제도

가정폭력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목적(제 1 조)부터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등의 정의(제 2 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 4 조 제 2 항),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제 4 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제 5 호)도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도 가정폭력처벌법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있다(제 10 조 제 2 항 제 6 호).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가정보호재판 절차 흐름도(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다면 가해자인 '가정폭력 행위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아래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제 40 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2) 실태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상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실제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명백한 폭력임에도 이주여성과 아동은 이것이 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는 배우자에 의한 폭력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⁶. 하지만 신체적 폭력 외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폭력이라는 인식 없음

저희가 사례 개입하면서 이주여성들이 폭력 아니래요. 분명 폭력이고, 학대인데 그 여성들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 하거든요. 정서학대, 경제 학대, 방임, 아이 목욕 안씻기고 안먹이고 그런 것도 학대 아니래요. 소리 지르는 것도 학대 아니래요. 때려야 학대래요. 때리는 것도 어느 수준. (중략) CCTV 집에도 설치해요. 그런데 그런거 다 폭력이라고 생각 안해요. 그냥 본인이 힘들고 답답한 거지 폭력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중략) 저희는 계속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데 부부가 무슨 성폭력이냐.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네. 그리고 내가 성폭력이라고 하면 과연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성폭력이라고 말하면 믿어줄 사람이나 있냐 그러는 거죠. <사례 T>

물론 모든 유형의 가정폭력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⁷. 하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주여성 중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가정폭력임을 인식하지만 이것이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⁶ 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20-21면.

⁷ 가정폭력처벌법 제 2조(정의) 제 3호는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를 구별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함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문제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지, 경찰에 개입해서 페널티를 주지 않아요. 오직 여성이 이혼을 원할 때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법원가서 이혼하라는 결정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서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나도 (오늘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인터뷰 8>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 법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본인들에게는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규정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국가 출신인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다른 가정 구성원 역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학대(체벌금지)가 한국인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

다른 외국인들도 핸드폰 줄로 바닥 내리치는 거를 많이 해요. 한국이니까 한국사람한테만 체벌금지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꾸 넘기게 되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13>

B. 신고의 어려움(정보, 언어)

이주여성인 가정폭력 상황을 인지하였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선주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112 라는 신고번호를 모르는 이주민들도 상당히 많다.

경찰 신고에 대한 정보가 없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3년 전에, 어떻게 나와 나의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전화? 어떻게 전화하는지도 모르고 단체에 연락?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어떻게 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는지 남편이 집에 어떻게 오지 못하게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 문을 잠그는 거 말고는 알지를 못해요. <사례 B>

동거비자는 체류 문제,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것, 아니면 신고 방법을 모를 수 있겠죠. 또는 가정폭력이 소문이 나면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략) 여성들이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인터뷰 10>

이주여성인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마음먹었더라도 언어의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 11월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후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112 다국어 신고앱'을 통해

모국어로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⁸.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112 신고센터에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⁹ 몇 개의 언어가 상시로 제공되고 있는지조차 알기 쉽지 않다.

경찰 신고에 대한 정보가 없음, 언어적 문제

신고하지 못했는데,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었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신고전화도 모르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경찰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후에 친구와 함께 신고하려고 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신고 전화번호 몰랐나요?) 몰랐어요. (지금도 알아요?) 지금도 몰라요. 당신(통역)이 저한테 알려줬는데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나요. (중략)

-당시 112 를 알았으면 신고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때 만약 알았으면 신고했을 건데, 다만 긴장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찰에 신고는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를 도와서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 전화할 수 있으면. 나중에 보니 신고를 안 했기에, 안 했으면 말고. 그 친구는 한국어를 하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제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신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례 A>

언어의 문제는 경찰 신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걸림돌이 된다. 다행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는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참고인, 피의자, 증인, 피고인 등으로 공식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되는 경우라도 변호인과의 면담을 위한 통역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한국어에 서투른 외국인 가해자(행위자)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으로 상담위탁 처분을 받더라도 통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상담이 진행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담소에는 통역인이 존재하지 않아,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통역인을 섭외하여 대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⁸ 2019.11.21 정부 5개 부처 합동 보도자료

⁹ “범죄피해 내몰린 이주 여성들, 112로 신고하세요”, 연합뉴스, 2021.7.27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7061900061> (2023. 2. 15. 검색)

아동학대 상담시 통역문제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월 1 회 정도 아동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가족 및 동생에 대한 모니터링도 요청을 했는데, 상담 명령을 할 수는 있는데 통역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반영이 될지가 문제였죠. (중략) 상담을 초반을 아보전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때 통역이 없어서 저희 단체에서 상담 전공한 영어 통역자가 자원봉사로 했어요. 법원에서 명한 상담시간을 안 지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였어요. 외국인이라서 문제이기 보단, 상담이 허울 뿐인 것 같아요. <사례 J>

C.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태도

가정폭력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선주민 가정에서 문제로 언급되는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¹⁰가 이주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가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간 사례가 있으며, 경찰이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 이주여성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사례도 있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때린 것도 신고하고, 불법이라고도 했어요. 경찰에 택시타고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우리 신랑이 저 때렸어요, 불법도 맞아요. 경찰이 신랑 이름 같은거 적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했어요. 말했어요, 마누라 다시 때리지 말라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신랑 다시 안때린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하니까 그냥 갔어요?) 네. (중략)
-그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겠네요?
예. 좀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국말 잘 몰라요. 제가 OO 어(모국어) 쓰고 핸드폰 번역기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경찰에 말해봤자 안되니까 아이 데리고 나온거예요?) 맞아요. 제가 너무 참고 살았어요. 마누라 때리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제가 매번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사례 Y>

경찰의 초기대응 미흡

112 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조사도 받고 근데 경찰들이 (초기)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풀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풀어줬어요. 여성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후에 경찰이 잠복해서 남자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가정폭력이라서 그런지 미등록 외국분이라 그런지 처벌을 안 하고 바로 출입국으로 넘겼어요. 출입국으로 넘겼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가 또 심하다 보니까, 그때

¹⁰ '남편 폭력'경찰신고 4 번도 소용없었다...아내 숨진 뒤 구속. 한겨레 2022. 10. 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1674.htm (2023. 2. 15. 검색)

OO(국적국)에 한참 격리 3-4 주 하고 이럴 때라서 OO(국적국)으로 추방은 못하고 언제까지 귀국한다는 보증서를 적고서는 외부로 나왔죠. 여성은 이제 거기서 두려운 거예요. 혹시 자기 찾아올까 봐. (중략)

어쨌든 여성한테는 운 좋게 남자분이 잡혀서 지금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찰서에서 초기에 너무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동안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시로 저한테 전화 와서 저도 계속 전화하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전화와서 이 여성의 안부에 대해서 묻고 그런 적이 있어요. <사례 O>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 8 조의 2 에 의해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¹¹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주여성이 가해자와 분리되기를 원함에도 단순 별거로 치부하여 그럴 수 없다고 하거나, 뒤늦게야 분리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이 분리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음

나는 이 사람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과의 별거라고 했어요. '나는 이 사람과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나에게 이 케이스를 종결할 것인지를 물어봤고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중략)

경찰은 계속 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경찰은 케이스를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원치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OO(국가)공동체 어른들이 나에게 왔고 종결하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케이스를 종결했어요. <사례 G>

신속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두번째 신고 당시에 경찰 조사는 문제없이 다 진행됐어요.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고, 최근 경찰에서 통지서를 받았어요. 받은 통지서를 사진 찍어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OO(지역)경찰서에서 OO(지역)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이고, 경찰서에서 받은 통지서 상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렸어요.

¹¹ 제 8 조의 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 5 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 29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 1 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9 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 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지금 사는 집도 같이 살던 집이고, 조사받는 동안도 같은 집에 살다가 분리 결정이 나와서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집 주소를 다 알고 있어요. <사례 K>

D. 외국인 간 사건의 특수한 상황

외국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되도록 사건화 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함에도 본국의 문화를 언급하며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찰의 태도는 이주여성으로 하여금 더욱 신고를 꺼리게 만든다.

경찰이 외국인 사건은 빨리 종결하려 함

경찰 대응에 있어서 다행히 처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인지 별다른 차별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혼자 나서는 경우, 통역도 필요하고 일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마무리하거나 되도록 사건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의 법대로 하지 않고 만약 그제 너의 나라의 문화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는지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례 L>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가해자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경찰이 즉시 가해자를 출입국으로 연계해 버리기도 한다. 이주여성은 자기 때문에 가해자인 남편이 강제출국 당했다는 죄책감에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경찰이 출입국으로 연계함

OO 경찰서에서 와서 신랑 직접 데리고 갔어요 출입국사무소에. 조사 다 끝났으니까. 저는 불법인데 애기 없으면 출입국 바로 잡혀갔어요, 애기 있어서 그냥 돌봐주는거예요. (중략) 신고 안하면 이런 상황 없었잖아요. 엄청 후회돼요. (후회해요?) 신랑이 보호소에 가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요. 3 일 동안 밥도 못먹고 물만 먹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속상해가지고. <사례 Y>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은 피해자가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¹².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¹² **출입국관리법 제 84 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 46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92 조의 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 84 조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당했다며 소위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출입국에 통보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5) 체류 관련 제도의 문제 목차 중 C. 미등록 체류와 '통보 의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 출입국에 통보

(경찰이 출입국에 연락을 했어야 했는지? 통보 예외 사유가 아닌가?) 쌍방폭행으로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보니 통보를 해야 했던 것 같아요. 가정폭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방이 맞았다고 하면 자기도 맞았다고 하면서 쌍방폭행이 되어서 문제가 돼요. 상대방이 미등록이거나 외국인이면, 추방 당하길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신고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떨어져서 부양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선택지가 없어서 참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사례 N>

4) 이혼과 관련한 문제

(1) 현행제도

외국인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국제사법」 제 56 조¹³에 의하면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제 1 항 제 1 호),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제 2 호)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 본 실태조사가 다루고 있는 외국인 가정은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가정으로 위 제 1 호 내지 제 2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혼인관계를 다룰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 관할이라

5.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¹³ 제 56 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하더라도 재판의 준거법¹⁴은 부부가 동일한 국적인 경우 그 본국법이 되며, 부부의 국적이 다르다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한 이혼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원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 실태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들이 혼인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자격 때문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체류자격 문제 다음으로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한국에서는 이혼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본국에 가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본국에 가서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남편이 이혼소송 한다고는 안하나?

말한 적 있어요.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고 비용도 드니까. 외국인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코로나 문제로 OO(국적국)에 돌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OO(국적국)에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돌아가야만 한다고 했고, 위임하더라도 안된다고 했어요. 정상적인 채널로는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소송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직접 가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변호사 상담도 했는데 위임해서 소송하는 비용이 1 천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소송기간도 몇 년 걸린다고 했고, 최소 2 년 이상은 걸린다고 들었어요. <사례 A>

한국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거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본국에 가서 이혼하거나 한국에서 그냥 계속 살거나. <인터뷰 8>

한국은 외국인 부부가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누군가가 이혼을 원하는데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 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그녀가 내 와이프야.' 이혼을 할 수 있어야 해. <사례 G>

¹⁴ 제 66 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 64 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 64 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혼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본국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인터뷰 11>

남편이랑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한국에 있는 OO(국적국)대사관에서 이혼 수속은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의가 오면 이렇게 알려주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위임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비용문제도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니 되도록 이혼은 OO(국적국)에 가서 하도록 얘기를 해주거든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할 수 있지만 다 한국 국적 아니고 OO(국가)인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기서 혼인신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국에 가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혼을 못하니 별거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터뷰 14>

앞서 밝혔듯이 국제사법에 의하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더라도 한국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물론 준거법은 본국법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법령을 살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나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의 경우 한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에 외교부, 대사관 인증을 받아 본국에 이혼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별거를 하거나 가정폭력을 참고 살기도 한다.

5) 체류 관련 제도의 문제

2023년 2월 기준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2,162,358명이다. 그리고 일부 체류자격자는 한국 정부가 허락하면 한국에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다. 이 중 외국 국적자인 배우자 및 자녀들은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또는 기타(G-1) 체류자격 등으로 주 체류 허가자에 종속된 체류자격자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주 체류자격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체류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종속된 체류자격자인 가족들도 그 체류자격이 소멸된다. 그리고 종속체류자격자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앞서 3장 '대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태조사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요 사유로 주체류자격자의 도움이 없을 시 체류자격연장의 어려움, 미등록자의 경우는 강제퇴거 가능성,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일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 등이라 밝히고 있다.

본 장에서는 피해여성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체류자격 제도가 피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나열해 보고자 한다.

(1) 현행제도

A. 가정폭력, 아동폭력 피해자등 체류자격 연장

출입국관리법 제 2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는 가정폭력 피해자 특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체류자격 연장은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 참여자들과 같은 외국국적자의 배우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체류자격연장 관련 법적 근거는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 2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체류 연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체류자격 연장은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이 경찰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등이 진행 중일 때 만 가능하다. 이 규정에는 체류자격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제 25 조의 2 제 2 항은 체류 연장 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 25 조의 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조제 1 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조제 4 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3 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B.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 17 조 제 1 항),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 18 조 제 1 항).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가 아닌 외국국적자가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¹⁵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 20 조).

본 실태조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재외동포(F-4)의 배우자로 가족동거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여 방문동거(F-1) 체류자격¹⁶을 소지하고 있다. 방문동거(F-1) 체류자격자는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 지침인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의하면 “방문동거 자격 체류관리에 관한 개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지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와 가족(F-1) 취업제한 완화’ 외에 개별지침의 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

실태조사 참여자들 중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구성원들도 있었다. 이들과 같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허가(G-1-6)를 받은 경우와 그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은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기타(G-1) 체류자격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 폭력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¹⁷

C.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그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미등록체류자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출입국 등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출입국관리법 제 84 조 제 1 항).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92 조의 2(통보의무의 면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유인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제 92 조의 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 84 조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¹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5 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¹⁶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¹⁷ 2023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 15 조제 1 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 22 조제 3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 폭력피해자 여성과 아동은 미등록체류자인 경우라도 위 시행령 제 92 조의 2 제 5 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구제 대상으로 경찰은 출입국관리당국 통보의무에서 면제된다.

(2) 실태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

A. 가해자의 체류연장을 걱정해야 하는 피해자들

피해자들은 외국국적자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주 체류자격자인 가해자가 경찰에 처벌을 받게 되어 체류자격 연장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다. 체류자격이 종속체류자격의 형태로 있을 때는 가해자가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자신과 자녀들의 체류자격 역시 연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로 부터 안전해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의 체류자격 연장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인다.

<사례 D> 피해자는 한국 입국 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칼과 가위 등으로 협박을 당했다. 그녀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으면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살하는 길 밖에 없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죽을 것 같은 폭력에 도망 나와 외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경찰에는 실제 벌어진 일들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 흥기를 들었다는 것을 언급하여 남편이 체류자격 연장이 안될 경우 본인도 체류자격 연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남편의 비자 연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자신을 보호해야 해야 했어요. 경찰에 진술을 하러 가는 상황이면 남편이 내일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묻고, 또 진술의 내용에 대해 지시했어요.

남편이 흥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 나에게도 불이익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내용은 빼고 진술을 했어요. 비자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어요.
<사례 D>

<사례 G>에서 피해자는 수년간에 지속적인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가정폭력이 이어졌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최근에는 대상이 바뀌어 아내인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도 때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해지면서 주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고 한국에서 학동학대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에 남편이 추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까 두려움에 놓인다.

OO(자녀) 친부가 나와 OO(자녀)를 학대했고, 경찰이 왔고, 나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OO(자녀)는 어렸고 그는 수감되었어요. 그가 감옥 안에 있는 모습을 나는 보았고, 그가 불쌍해 보였어. 그는 무릎을 꿇고 나에게 빌었어요. (중략) 나는 OO(자녀)에게 빌었어요. 제발 그를 처벌하지 말라고. 그를 처벌하면 그가 추방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책임은 나와 네가 지게 된다고. 우리가 그를 돌아가게 한 것이 된다고. 그냥 그를 내버려두자고. 우리는 케이스를 취하했어요
<사례 G>

B.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자격 연장 어려움

종속체류자격의 배우자들은 남편이 자신의 체류자격 연장을 해 줄지 여부를 걱정해야 한다. <사례 D>에서 가해자인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체류연장을 무기로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괴롭힌다. 남편은 본인이 없으면 체류자격 연장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로 자신의 과시했다.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은 체류연장을 위해 돌아오라며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면 다시금 폭력상황에 놓이는 일이 반복되었다. 남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서 <사례 D> 이름을 제외하였고 체류자격 연장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료도 100 여만원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체류 자격을 연장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100 만원이 있어요. 남편이 납부하지 않았고 저도 돈이 없어요. 지금껏 남편이 저 와 아이들의 외국인 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보험료 영수증을 보여 주는데 나에게 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남편이 (나의) 체류자격을 연장해 줄지 알 수 없어요. <사례 D>

한국에서 10 년을 거주한 <사례 A>의 여성은 가정폭력피해자로 집에서 쫓겨났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자로 한국에서 주로 성장하여 모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이를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자녀를 위해서 집에 들어가 자녀를 돌봐 주고 싶지만 “몸만 나가라는 남편의 야만적인 결정”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주로 발로 걷어차는데, 아주 세게 찼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사람이 온 몸의 힘으로 저를 걷어차서 제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또 한번은 제 머리카락을 낚아채서 현관문 입구에서부터 안방으로 끌고 간 적 있는데요, 도망 못 가게 하면서 도망가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그 사람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당시 아이도 현장에 있어서 아이도 아빠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붙잡고 했는데, 아이도 밀치고 했어요. (중략) 당시 제가 무서워서 일단 나가서 서로 진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갔다가 두 번 다시 저를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용서라기보다는, 아이를 함께 케어하고 싶었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사례 A>

<사례 A>의 여성은 한국에 남아 있길 원한다. 가정을 이루고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한 그녀에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은 쉽지 않다. 아이는 한국어만 할 수 있고 본인 역시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했기에 다시 돌아가도 적응하기 힘들 거라 생각한다.

아이가 여기 있어서 어떻게든 남아있고 싶어요. 두 가지 원인인데 한국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80~90% 한국에 있고 싶어요. 또 하나는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이미 이 생활이 습관이 되었고, 친구, 인맥, 생활 습관 등 다 적응이 되었고. 너무 오랫동안 본국을 떠나 있다 보니 돌아가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20%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아이와 함께 본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아이와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커요. 아이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모국어를 거의 몰라요. 할 수 있는 모국어가 거의 없고, 본국에 가더라도 학습을 따라가지 못할 거고. 초등학교 3 학년인데 이미 한국의 생에 적응해 왔고, 모국어도 못해서 어떻게든 한국에 남아서 아이와 함께 자라는 모습도 보면서 남아있고 싶어요. 양육권을 얻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남아서 아이와 함께 살고싶어요¹⁸.

여성은 집에서 쫓겨난 이후 남편이 체류연장을 해 주지 않아 행정사의 도움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고 체류자격 연장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또 출입국이 자신의 체류자격을 연장해 줄 지 걱정하고 있다.

¹⁸ 본 실태조사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들 역시 이혼하면 자녀가 있어도 한국에서 체류자격 연장할 수 없다.

(연장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옛날에 남편 통해서 연장할 때는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남편이 본인의 신분증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남편이 그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제 자신의 실제 상황 있는 그대로 개인 상황 설명서 제출했구요. 상담소 상담원이 증인으로 함께 방문해서 설명했고, 그 분들도 실제 상황과 맞는지 살펴봐서 연장해줬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연장은 해줄지 많이 걱정됩니다.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례 A>

그녀는 출입국관리당국에 희망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 본인과 같이 아이가 있고 한국에서 얼마 이상 살면 혼자서라도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

C. 미등록 체류자들과 '통보 의무'

미등록 체류자 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제 84 조 통보의무에 의해, 그 가해자는 출입국관리당국에 연계된다. 피해자의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통보 의무조항은 미등록 체류자 등 사이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발생될 경우 피해자들이 생계부양자인 주체류자격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미등록자간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도 쌍방폭력으로 인지될 경우 모두다 가해자가 된다. 이 경우 그 피해 경중에 관계없이 쌍방이 모두 출입국관리당국에 연계되기도 한다.

<사례 N>의 이주여성은 미등록체류자로 가해자 역시 미등록체류자였다. 배우자로 부터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고 <사례 N>도 이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도 상해를 입었다. <사례 N>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본인도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출입국관리당국에 연계된다. 출입국관리당국은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었기에 여성은 훈방하고 그의 배우자는 출입국 보호소에 보낸다.

<사례 Y>의 이주여성은 자녀들과 함께 미등록체류를 하고 있다. 남편은 자녀를 때렸고 반복되는 폭력 상황에 여성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남편에게 경고를 하여 남편의 행동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은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변이 연계되어 본국으로 출국조치 된다. <사례 Y>의 여성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신고하지 않았을 거라 후회한다.

상황 제가 다 만들었어요. 신고 안하면 이런 상황 없었잖아요. 엄청 후회돼요. (후회해요?) 신랑이 보호소에 가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요. 3일 안 밥도 못 고 물만 먹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속상해가지고. (중략) 내가 왜 신고했나. 조용히 있을 때는 생각해요, 내가 왜 신고했어, 그냥 신랑이랑 같이 천천히 말하면 되잖아. 왜 바보같이 그랬나. 엄청 속상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랑 신고하면 OO(국가) 잡혀 가는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신랑한테 무섭게 말해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니래요. 신랑 잡혀 가서. <사례 Y>

D.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생존을 위한 기본활동

<사례 A>의 여성은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한 이유 중 하나를 남편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체류자격자 홀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수입을 만드는 것이 버거울 것이기에 그 배우자인 본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실태조사에서 만난 여성들의 대부분은 “돈을 벌어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원한다.

이런 가족이 있어요. 여성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F1 이라 일도 못하니 독립을 할 수 없어서 견디고 있어요. 심리적 상담도 받을수 없어요. 누구에게 말을 했다가 남편이 알게 되면 또 당하고 무서운 마음에 밖에서 말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조용히 살면서 가끔 알바를 하고 있어요. 돈을 벌어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게 목표라고 해요. <사례 C>

종속배우자들은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주어지는 인도적 체류자나 그 가족 체류자격라 하더라도 사회적 연계망이 한정되어 생존을 위한 취업활동이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용기를 내기 쉽지 않다.

남편에게서 떠나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져요. 한국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외국국적) 여성들은 거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본국에 가서 이혼하거나 한국에서 그냥 계속 살거나. (중략) 독립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성이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사례 B>

그러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조차 주어지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더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한다.

일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한 방문동거 체류자격자에게 “독립된 생활” 희망은 그저 ‘희망사항’일 것이다. 생존을 위해 일을 찾아보지만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졌기에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현재 일하고 있나요?)네. 일당만 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일하지는 않아요. 정상적으로 채용하는 고용주도 없고, 회사에서도 임시직으로만 뽑지 직장인으로 다닐 수는 없어요. <사례 D>

불안하지만 출입국관리당국 몰래 일을 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한다. <사례 D>의 경우 여성은 남편과 별거를 선택한 후 출입국당국 몰래 일을 하면서 아이를 건사하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아 오히려 (정신적으로) 강해졌으며,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이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혼자서 살고 아이가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럼에도 그녀의 오늘은 불안해 보인다. “(별거후 일을 시작했을때) 열정적인 태도로 모든 일을 하고 나가서 하늘만 봐도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녀는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에도 일년 후에는 지금 보다 심리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말한다.

그녀들에게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첫 출발점이 ‘일을 하면서 체류자격연장에 두려움이 없는 조치’일 것이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 구성원 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및 활동가들을 인터뷰하였다. 또 인터뷰에서 드러난 대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현행 제도의 개선,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도입이라는 두 측면에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현행 제도의 개선

(1)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1997년에 법제화되었다. 가정폭력 관련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지법과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담은 처벌법의 두 축으로 작동한다. 가정폭력이 범죄임이 법제화된지 25년이 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여전히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적인 일로 간주되곤 한다. 한국인 여성도 가정폭력 피해자일 때 사회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법과 제도는 한국인 여성과 다문화가족인 결혼이주여성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도 태생적 한국인 여성,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여성, 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여성으로 서열화 되어 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는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이 외국인 가족 내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이다. 이미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었던 경로의존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체류 형태의 이주여성 지원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제 1 호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외국인간의 결합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전달체계에서도 외국인 가족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2) 전문성을 갖춘 통역 서비스 제공

이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에서는 언어와 통역의 문제가 항상 언급되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13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나 대부분의 언어는 9~18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야간에는 소수언어 상담원과 연결이 불가능하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역시 20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나, 18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이용 가능하다. 주간에도 사용자가 많지 않은 언어의 상담원은 요일, 시간별로 번갈아 가며 근무하거나 상담원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탓에 긴급한 순간에 상담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통역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이다. 현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자체적인 통역인 풀을 운용하며 공인 시험 없이 대부분 민간 자격증인 사법통역사 자격만 있으면 쉽게 통역인으로 등재된다. 젠더 감수성이 없는 통역에 의해 2차 가해가 일어나기도 하며, 심지어 젠더폭력사건의 통역인으로 남성 통역인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역인을 확충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통역인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법원은 2019년부터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하고, 통·번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기관에서는 별도의 자격이나 교육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민간 자격증에만 의존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거나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대로 된 통역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자체적인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통역인이 최소한의 언어, 윤리적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된 통역인들에 대해 법률,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젠더감수성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통역이 제공되는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신문을 받거나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때만 통역이 제공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더라도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된 면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정에서 가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채 앉아있게 되기도 한다. 변호사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사 면담에도 통역이 제공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사건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최소한 법정에서의 모든 대화는 통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통역인의 숫자도 부족하지만 그마저 서울,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별로 자체적인 통역인 풀을 운용하는 현재의 방법 외에 전국의 통역인 풀을 공유하고 출장이나 화상통역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통역인들이 꾸준히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역비, 교통비 등이 합리적인 선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 외국인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통보의무' 조항에 대한 교육 및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 84 조 제 1 항은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민들이 접하게 되는 일선 경찰 중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미등록 외국인을 발견하면 무조건 출입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미등록 이주여성이 출입국으로 넘겨지는 사건이 최근에도 발생한 바, 경찰들을 대상으로 통보의무 뿐 아니라 통보의무 면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통보의무 면제는 소위 쌍방폭행인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가해자가 자신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할 경우, 경찰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입국에 통보해버리곤 한다. 가정폭력은 지속적,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순간 가해자가 되는 일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의 기간, 정도, 심각성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견 쌍방폭행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상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는 통보를 미룰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보의무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 84 조 제 1 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통보를 의무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보의무 면제 대상인지 일차적인 판단을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으며 통보 여부도 재량으로 남기고 있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통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피해자의 체류기간연장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주 체류자격자가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체류자격이 문제된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최소한 주 체류자격자인 가해자와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 25 조의 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제 1 항 제 1 호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부분을 삭제하여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구제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 체류자격자로부터 분리되어 잠시나마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면 출입국관리당국은 종속적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을 소명하면 짧은 기간 동안 체류기간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해주지 않고 있어 취업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한시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종속적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알지 못한다. 관련 규정도 공개된 지침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방문동거(F-1)와 동반(F-3) 체류자격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가 - 가정폭력 예방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체류 정책이 외국국적자 가정 내 가정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반복, 장기화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023년 2월 통계월보에 의하면 방문동거 체류자와 동반 체류자 수는 각각 101,113 명과 24,121 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5.8%로 나타난다. 연령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수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성년자 수를 제외한다면 실제 성인 배우자들의 수는 10여만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특히 방문동거(F-1) 체류자 대부분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추정된다.

실태조사 사례에서 보이듯이 이들 가족들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에 주 체류자격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 체류자격자에게 가족 내 권력이 집중되게 하는 1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의 기본 조건인 체류자격이 주 체류자격자에게 종속되면서 작은 사회체계인 가족 내 구성원들 사이에 권력의 편중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속적 체류자격을 가진 배우자들의 취업활동을 허용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내 권력관계의 편중과 불평등을 감소시켜 외국국적자 가정 내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도입

(1) 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권 확대

보장시설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또는 학대아동 보호시설 등은 한국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피해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만 허용되는 사회보장시설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폭력피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바, 국적 내지 체류자격이라는 협소한 기준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부당하다.

여성가족부의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에 입소한 비수급 이주여성에 대해 긴급지원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본래 보장시설에서는 각 입소자에 대해 기초생활급여 및 의료급여가 적용되지만,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비”로 생계비, 교통·통신비, 의료지원비, 법률지원비, 통·번역비, 출국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등을 총당하도록 하는 것이다(해당 운영지침 518 면 참조). 그런데 긴급지원비는 비수급 입소자의 수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액이 일괄적으로 지원된다. 일례로 A 이주여성쉼터의 경우 비수급 입소자가 현재 6 명이 있으나 긴급지원비는 4 인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결국 긴급지원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지원비, 법률지원비 등을 사용해야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비 부족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이주여성의 입소를 꺼리게 된다. 특히 긴급지원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의료지원비는 “피해자 치료보호 사업 및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진료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지원, 건강검진비, 일상치료비, 산후조리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입소자의 건강보험료는 긴급지원비로 총당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주아동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없어 입소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학대 피해를 입은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8. 1. 22.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 학대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개정하기 바람

나. 아동복지시설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복지법」 제 15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다. 학대피해 이주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이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해당 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보건복지부는 위 권고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에 이주아동을 위한 보호방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소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도 확보할 수 없으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였고,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의 예산 지원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직면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에 시설보호 외국 국적 아동의 생계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있던 지침의 문구에서 “노력”을 삭제해서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국적 아동’의 생계비 지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의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1 권 208 면, 250 면). 또한 보건복지부는 동 운영지침에서 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 처리 요령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 조 및 제 9 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불법체류, 출생신고 미등록, 무연고 상태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5 조부터 제 17 조까지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2 권 210 면).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외국 국적아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입소를 거부하거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적에 따라 아동을 차별하고 있지 않듯, 학대피해를 입은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서는 안된다. 따라서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이나 이주아동이 쉼터 또는 그룹홈에 입소한 경우 체류자격 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다른 보장시설 입소자들과 동일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적과 체류자격에 의한 차별은 보장시설 입소시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소, 쉼터의 이용 같은 기본적인 권리부터 피해자로서 각종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주여성 역시 같은 법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 핫라인 - 상담소 - 쉼터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에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공적 지원 체계는 극히 일부만 작동한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언급했던 국적자 중심의 사회보장 지원 제도에 있다. 외국인끼리 가족을 구성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복지 지원체계에 편입될 수 없다. 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정보나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직접 수혜는 불가능하다.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과 같은 아동복지부터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지원, 주거지원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지원이 불가능하다. 가정폭력피해는 피해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가족 구성원의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동일한 사회보장권이 주어져야 한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기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한 체류정책 도입

앞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출입국관리법 제 25 조의 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제 1 항 제 1 호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이런 단기적인 조치가 피해자들에게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용기와 가까운 미래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희망을 주는 조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근본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법적지위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기회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이후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 아동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한국과의 연결성, 귀국 후 처하게 될 어려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체류하는 동안 가해자와 완전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본 실태조사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영주자격자(F-5)의 배우자(F-2) 역시 가정폭력 등 영주자격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더라도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영주자격을 가진 자녀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도 역시 체류자격을 연장하여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3) 적극적인 홍보

실태조사를 통해 많은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범죄라는 것,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 상담소나 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미등록이더라도 통보의무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 외국인 가정이더라도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각종 안내 리플릿 등을 발간하나 대부분 발간한 기관 내에만 비치되어 있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는 등 홍보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한국의 법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이주민이 직접 검색하여 찾아내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주민들이 최대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정보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부록> 외국국적 가정 내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해외 법제¹⁹

1) 미국

(1)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조건면제

조건부 영주권이란 가족 초청의 바탕이 되는 결혼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은 부부가 2년의 기한이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기한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미국 국토안보부에 공동으로 조건 제거를 청원해야 하고, 공동 청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영주권은 박탈된다. 그런데 주체류자인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면 이민국적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허가를 얻어 영주권 조건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조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당해 결혼이 진실(good faith) 했어야 하며, 2) 폭행(battering) 또는 극도의 잔학행위(extreme cruelty)가 있어야 하고, 3)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이 예견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결혼 당시 가해자가 중혼에 해당하여 당해 결혼의 진실성을 떠나 합법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 배우자가 그를 합법적 결혼이라고 믿었고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건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2) 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 VAWA 자기청원

영주권자인 가해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관계를 기반으로 가족 기반 이민의 피초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영주권자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위 VAWA 조건면제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적절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갖춘 경우 타인의 초청 없이 스스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1세 미만의 자녀 역시 유사한 요건으로 자기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¹⁹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의 협력하에 김상철, 김현진, 최다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이 집필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발행한 <외국국적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해외법제 검토 -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2021. 8.)를 발췌 요약 하였습니다.

원자료는 https://namseoul2021.or.kr/bbs/board.php?bo_table=B06&wr_id=5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그 외: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추방취소

체류자격이 없어 추방대상자인 경우 가정폭력을 이유로 추방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폭행 또는 극심한 잔학행위를 경험했을 것, 신청 이전에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을 것, 적절한 도덕성을 지녔을 것, 추방이 추방대상자에게 극심한 곤란을 겪게 만들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추방 대상자였던 외국인은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며 그에 따라 추방 절차는 종료된다.

(4) U 비자

가해자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로서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당국의 조사 및 기소에 협조해야 하며, 그 범죄행위로 상당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어야 한다.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동반 가족에게는 U2 등 별도의 세부구분에 따른 비자가 발급된다. U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4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일부 공공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비이민비자의 특성상 비자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 언제든지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U 비자에 일정한 할당이 존재하여 승인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자체는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 대신 추방유예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추방유예되는 동안에도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5) 특별이민청소년 유형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s, SIJ)

SIJ는 더 이상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학대 또는 방치를 당하여 기존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대상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 미루어 '장기위탁양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자녀는 특별이민청소년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인 이민 유형 자체에 발급 가능한 비자 수의 할당이나 국가별 세부 할당이 있어 실질적인 영주권 취득까지는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2) 캐나다

(1) 가정폭력 임시거주허가(Family violence temporary residence permit)

1) 캐나다 거주 중에 2) 영주거주비자 발급을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3)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임시거주허가와 달리 가정폭력 임시거주허가에는 신청비용이 별도로 없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사이의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간의 산정은 피해자와 캐나다 사이의 관계, 자녀의 양육권 및 기타 가족법 관련 문제, 이민을 포함한 미래계획 수립에 필요한 숙고기간, 그 밖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민국의 심사관이 판단한다. 임시연방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긴급진료를 포함한 병원 서비스, 심리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처방약 등이 지원된다. 또한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결과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단기이주 배우자의 법적 지위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 가정폭력 임시거주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인도적 이민

인도적 이민은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조치로서, 가정폭력을 포함한 인도적 사유로 영주거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을 위해 자신과 부양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적 능력 규정과 관련하여 이민국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은 가정폭력과 다른 별도의 고려 항목으로 존재하며, 특별히 인도적 이민과 관련하여 법문언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3) 호주

(1) 체류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 파트너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체류자와 2년 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이민법에 적용하여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채 영주 파트너비자 심사를 하고 있다. 즉 피해자라는 이유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주체류자에 종속되지 않고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미 영주 파트너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더라도 구매 받지 않고 독립적인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2) 주체류자가 임시체류자인 경우

주체류자가 임시체류자격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중간비자가 활용될 수 있는데, 중간비자는 다른 비자 심사 중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간비자 A, B, C와 기존 비자가 취소된 경우 잠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비자 D, E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파트너비자 소지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지연되어 중간비자를 소지하게 된다면 그대로 취업, 학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족동반자격으로 체류 중이던 배우자가 가정 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여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심 기간 중에 독자적으로 경제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힘들다.

4) 뉴질랜드

(1) 주체류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뉴질랜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비자(Family Violence visa: FV)라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해당 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취업비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영주비자'로 양분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취업비자는 6개월의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을 허가한다.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여 이후 삶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할 시간과 생활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체류기간은 6개월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비자 심사를 기다릴 수 있도록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2)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취득을 의도하였으나, 3)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었고 4)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취업을 해야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배우자는 동성혼, 사실혼을 모두 포함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영주비자의 경우, 가해자인 주체류자와의 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학업, 취업활동이 모두 보장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취업비자와 구별되는 요건은 본국으로 송환될 시 1) 독자적인 경제적 부양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나 2)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학대나 배제를 당할 위험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주체류자가 임시체류자인 경우

주체류자가 임시체류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EU

(1) 가족 재결합 지침(Family Reunification Directive)

제 15 조 3 항

회원국은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을 시 독립적인 체류자격의 발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2) 시민의 권리 지침(Citizen's Rights Directive)

유럽연합 시민의 가족 구성원들이 본 시민과의 이혼, 결혼의 무효, 혹은 등록된 파트너십의 취소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이미 회원국 내에 거주할 시 거주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이스탄불 협약(Th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제 59 조

당사자는 배우자 혹은 파트너의 체류 신분에서 종속된 체류자격을 가진 피해자들이 혼인관계 혹은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고 신청할 시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혼인 혹은 관계의 기간과 무관해야 한다.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승인하는 것과 그 기간은 국내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6) 독일

(1) 영주권 조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도 임시 체류자격을 5 년간 소지해야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그러나 체류법 제 31 조 제 3 항에 따라 주체류자가 독일 영주권 혹은 EU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그 주체류자가 종속된 배우자를 동거관계의 종료 이후에도 부양할 것이 보장된 경우에는 영주권의 필요조건 중 요건이 완화되어 최소 60 개월 자활/의무 노후연금가입증명, 피고용자일 경우에 고용될 수 있는 자격, 혹은 무기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영주권이 발급될 수 있다.

(2) 임시체류자격 별도 부여

혼인관계의 동거가 종료될 경우에 주체류자에 종속된 임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던 배우자는 1 년간의 독립적인 임시체류자격으로 연장 받을 수 있다. 그 요건은 독일연방 내에서 혼인 동거관계가 3 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거나 주체류자가 혼인 동거관계를 지속하던 도중 연방 내에서 사망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한 혼인관계의 동거가 3 년 이상 지속되었어야 한다는 조건은 혼인관계를 계속할 때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면제된다. 특별한 어려움에는 종속된 자의 법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가 포함되며,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를 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적인 이익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복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 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체류자격의 연장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이미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안녕이 주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고려되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 체류자격의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특별한 어려움을 판별하는 데 독일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엄격하게 판별한다.

7) 영국

(1) 주체류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이미 가족비자를 취득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곧바로 영주권(ILR)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시체류자격(DDV)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배우자에게 종속된 자녀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주체류자의 자녀일 때, 혹은 그 주체류자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자녀의 다른 부모가 사망하는 등 오로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어야만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체류자격이 없는 피해자일지라도, 만약 체류자격이 본래 있었으나 만료된 것이라면 여전히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가정폭력으로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DDV(Destitution Domestic Violence) 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이전에 신청하며, 이 경우 3 개월 간의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즉각적인 공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영주권 심사기간 중에 영국 내의 체류자격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2) 주체류자가 임시체류자일 경우

주체류자가 임시체류자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주체류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 이들이 영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입국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8) 네덜란드

기한이 있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그 기한이 가족의 거주에 조건부인 경우, 학대로 인하여 동거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체류자격이 소멸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주체류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와 임시체류자인 경우를 나누지 않고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은 일시적 인도주의적 체류자격과 영구적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영주권의 일종)으로 나뉜다.

주체류자의 (법적)배우자로서 5년 이상 동안 종속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와 주체류자의 자녀로서 18세 이하에 종속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1년이 지났거나 18세 이상에 종속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체류자격을 5년 이상 소지하고 있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입증된 경우 영주권 발급을 위하여 사회통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만약 5년 이하로 체류하였다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영구적인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영구적인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은 노동허가 필요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1년이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돌아가는 것으로는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의 위협을 피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1년이 지난 후에도 가정폭력의 위협을 벗어날 수 없거나 혹은 다른 인도주의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고려될 때에는 영구적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시적 인도주의적 체류자격 또는 노동허가 필요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토론문]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에 접근하며

나영정/타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국적, 가족, 체류지위와 노동을 둘러싼 제도와 독립과 친밀성, 양육과 자율성, 독립과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복잡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도개선의 방향이 상대적으로 막막하고, 여러가지 중첩된 낙인이 작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기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발걸음에 존경심을 보냅니다. 토론을 요청받았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보태는 것은 역량을 넘어서는 것인듯합니다. 그저 이주민, 난민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따라가면서 제가 이 현장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운동의 지향과 방법속에서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으로 한정해야 할 듯합니다.

- 가정폭력 이슈에 접근하기

이주민의 체류를 받아들이는 쪽 국가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이주민을 위계화하고 완벽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의 욕망을 익숙하게 느껴왔습니다.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이주 정책은 매우 성차별적, 인종차별적이며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 그 자체입니다. 한편 가정폭력의 문제가 정상가족을 생산하고 유지하려는 국가의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것 또한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여성운동은 그러한 욕망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혹은 더 중요한 무게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¹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외국국적 상태의 부부 간에, 양육자와 아동 간에 일어난 폭력을 어떤 관점으로 다루는 것일까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폭력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피해자 쉼터에 입소하는 것 외에 주거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로 이루어진 이들에게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권 없는 이들과 경찰이 관계맺는 방식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단속과 관리의 대상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경청할 의무도, 실현할 의무도 지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경찰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 없는 자들을 단속하고 관리하던 원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주문을 넘어서 수 있을까요. 경찰을 앞세운 국가권력은 과연 “우리가 단속을 소홀히해서 폭력까지 저질렀구나. 어서 단속하고 격리하고 추방해야겠다”가 아닌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주 정책과 가정폭력 방지/처벌 정책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피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권력

한국국적을 가진, 선주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또한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고와 처벌 이후 스토킹과 보복의 문제, 자립과 양육의 어려움, 구조적인 빈곤의 문제를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국적을 가진 이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공권력이 행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공권력은 적법한 지위를 가진 가해자는 처벌을 하더라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가해자는 처벌을 하더라도 추방합니다. 이것이 피해 여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입니다. 두가지 방향 모두 피해를 중단시키고 피해자가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질서를 유지하고 국경을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목표를 두기 때문에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동시에 시민권이 부정되거나 신분이 가해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경우 국가에게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민, 난민 운동의 고민은 여기에 독특하고 특별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처벌과 추방 중심의 정책은 공권력의 권한과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이것이 피해자의 실제적인 피해회복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정의 운동, 인권운동, 감금반대 운동 등에서 지적합니다.²

² “구금 시설의 개혁이나 쇄신이 아닌 폐지를 추구하는 것은 형벌의 방식으로 구금을 활용하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을 부정의(injustice)하다고 보고 저항하는 것이다. 사형과 신체형이 가혹하다고 본 사람들은 물었다. 사람을 벌할 목적으로 죽여도 되는가.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해도 되는가. 현재의 폐지주의자는 자유형이 덜 가혹하다 보지 않는다. 사람을 구금해도 되는가.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감시와 통제의 위계 속에서 생활하며, 존엄과 건강을 박탈당하고 현재와 미래를 빼앗기는 잔혹한 경험을 해도 괜찮은가. 폐지주의는 단호하게 괜찮지 않다고 답한다. 가두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위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반발성 질문을 마주하다 살이 갖다 갖다과 같은 강력범죄의 가해자는 어떻게 하자는

물론 당장 갈곳없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고치는 문제 또한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요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할때 운동의 지향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논리와 작동, 효과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두가지가 그렇게 멀리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개별적인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과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공동체에게, 사회전체에 구체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 사건의 이전과 이후에 접근하기

근본적으로는 가족제도의 정상성(성차별, 위계, 국가발전을 위한 도구화, 생산을 위한 재생산의 식민화 등), 국경의 강화, 이주노동자의 도구화, 엄벌주의를 통한 공권력의 강화가 선주민/이주민 가정폭력을 발생시키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사인간의 폭력을 모두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폭력이 일어났을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따라 폭력의 의미와 권력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권력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중심이 되면 이러한 변화를 절대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이 국가가 생겨난 이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별거와 이혼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 혼자서 양육하기,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양육에 참여하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일자리가 제공되거나 그것이 어려울때 살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금이 제공되는 것은 아마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충분히 실현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분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공권력이 하더라도 사건 이전과 이후에 마땅히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보고서에 참여한 이들이 증언하듯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1:1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건의 이전과 이후에 개입한다는 것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과 추방, 노동자 지위에 대한 불안정화/불인정 문제, 난민 불인정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것과 더욱 단단하게 결합됨으로써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의 정상성을 해체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도구화를 거부하는 운동과도 만나면서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혼인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보장 제도를 해체하고,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지위를 해체하고 모두가 가족을 떠나서도, 본국을 떠나서도 노동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새판을 짜는 비전을 그리면서 가정폭력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역할을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요구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지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최대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가. 구금이라는 폭력으로 이들이 자신이 저지른 가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보고 잘못을 절감하고 변화하게 할 수 있는가. 가해자 개인을 가두는 것에 그를 형성한 일련의 사회 문제 해결을 내던지듯 맡겨버려도 되는가" 하 "미국의 굿수스 페지주의 트래스.쿼어 유포. 작은 메모"

넓히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 지위와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고,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류지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접근하고 피해자 지원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역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권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질문하기

나아가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방문동거와 동반체류자들에게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것이 가정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고민이 응축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한국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가족결합권, 가족구성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때, 가족 내 종속적 지위를 이용해야만 이주가 가능한 조건은 가족구성원 간의 종속과 폭력을 야기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이주한 가족구성원들은 노동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당합니다. 가족결합권을 비롯해서 가족구성권이 모두에게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종속과 폭력을 야기하는 조건이 해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하고 자립하고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의 경제적인 동기가 보편적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수많은 권리 중에서 하나의 노동권, 경제적 권리를 말한다가 보다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의 방식 자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족을 구성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가장 근원적인 동기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한시적으로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심사하고, 격리와 추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권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삶을 위협하며 예방적인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어떻게 보장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실제 삶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주는 영역입니다. 양육자라는 위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체류지위를 한시적으로 보장해주는 위치가 되기도 하고,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의 두 당사자의 임신, 출산과 양육은 특별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떤 당사자에게는 가족결합과 유지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작동하기도 하고, 취업이나 경제활동보다 더 우선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실천하기도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출산과 양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과 반대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적

영역입니다. Survived and Punished는 '범죄자'로 치부된 가정/데이트 폭력 생존자들을 지지하고 석방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의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수감제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법체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맥락에서 어떻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시 범죄화가 되는지를 밝혀내고 근원적인 변화를 모색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성과 재생산 영역이 권리가 되지 못하고 '모성'의 책임, 체류자격의 조건, 국가 인구정책의 도구가 될때 가정폭력과 결합하고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체류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이주여성과 아동이 겪고 있는 가정폭력이 이주 정책이 만들어낸 종속과 폭력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과정은 차별과 억압의 복합적인 마주침 속에서 해방적인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토론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토론문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 본 연구의 의의

- 현실/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무부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 정책/행정의 경직성을 넘어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들이 직면한 다층적 어려움 및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모색
 - 이러한 시도는 비단 인권 차원의 논의를 넘어 정부의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제도 운영, 아동우선원칙에 근거하여 이주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방안의 모색,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적 고려 필요성 등 이민/외국인 정책 추진상 여러 차원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경직적인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을 강조
 - 외국인의 국내 유입(entry) 단계에만 국한된 체류관리 정책 운영의 한계(정동재, 2019)
 - 체류 외국인은 유입 당시 목적(결혼, 취업, 교육, 관광, 인도주의적 사유)에 국한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이들이 처한 환경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존재 & 그러나 정부의 관련 정책/제도 운영은 이들이 여전히 유입 단계에 국한하여 삶을 살아가는 '단선적' 혹은 '고정적'인 존재로 외국인/이민자를 인식하는 양상이며, 이러한 정책 당국의 접근방법상 한계가 체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의 삶의 범위와 기간이 지나면서 여러 한계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가족(family) 형성의 양태와 범주의 다양화를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
 - 한국 국적의 아이를 출산 및 양육하는 결혼이민자만을 선별적(selective)으로 포섭 및 통합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제고 필요성을 제기
 - 이민자/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형성하는 이른바 "(다문화) 가족"의 형태는 점차적으로 다원화되어가는 양상이며, 정부가 인식하는 전형적인 <내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가족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범주의 부부, 가족 형태가 나타나는 양상임을 고려하여 정책설계 및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줌
- "정책문제"(policy problem)로서 외국인/이민자 부부간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Intimate Partner Violence)
- 발생 규모 관련 현황/통계 자료 등의 부재
 -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속성: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 경향(문화적 영향), 가족 내 부부간 발생하는 사적인 사안으로 가정폭력 규모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파악하는 불가능
 - 이민자/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 vs. 내국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 발생 규모 관련 구체적인 통계 현황 등이 부재: 얼마나 많은 국내 체류 이주 여성들이 관련될지?
 -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이주여성의 43%가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혹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존재하는 반면, 내국인 여성들의 경우 35%로 조사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4)

- 미국 내 라티노(Latino)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민자 가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48%)이 상대적으로 오래 체류한 이민자 가구(31%)에 비해 높게 나타남(Sabian et al, 2012)
-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가정폭력
 - 육체/물리적 폭력. 성폭력, 감정적/심리적 폭력(타인과의 관계 격리/단절, 공포심 조장, 험담과 욕설), 경제적 폭력(경제권 통제, 은행계좌 압수/사용 통제), 방임(보호, 식사, 휴식 등을 통제) 등
- 전술한 다양한 형태/유형의 가정폭력 이외에도 이주여성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배우자에 의해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을 경험할 수 있음
 - 체류자격을 가진(합법체류) 이주여성은 배우자에 의해 외국인으로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언어교육의 기회 박탈/금지하는 경우가 보고
 - 체류자격이 취약한 미등록/비합법 체류 여성의 경우 합법 체류자에 비해 더욱 극단적인 수준의 취약성에 놓일 수 있으며,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추방의 위협이나 자녀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이 어려운 상황
 - 개인적인 취약성(가정폭력 대응 관련 정보, 지식, 경험의 부족), 구조적 취약성(경제적 빈곤상태)...
 - 정도상의 차이는 존재하나, 체류자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난민(G-1), 방문동거(F-1), 동반(F-3) 비자, 외국인유학생(D-2) 등의 경우 배우자에 종속된 체류자격으로 인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경찰 신고) 등이 어려운 상황
 - 난민신청자의 배우자인 여성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정폭력 등을 남편으로부터 당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남편 뿐만 아니라 본인의 난민심사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신고 및 조력 요청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구조적인 장벽들이 존재
- 이주여성들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으로부터 도움 요청 시 경험하게 되는 다층적 & 교차적인 장벽들이 존재

Fear of loss of children (e.g. apprehension, deportation, divorce)	Discrimination and racism within service delivery system	Limited knowledge about laws and rights & domestic violence services
Geographic, social, and cultural isolation	Fear of deportation due to precarious immigration status	Social stigma related to disclosure of domestic violence
Language barriers and lack of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services that are easy to access	Economic exclusion due to lack of recognition of credentials	Lack of coordinated services
Lack of accessible shelters (e.g. physical barriers; inadequate provision of spiritual, cultural, or religious needs)	Lack of access to attendant care an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for women who are living with disabilities or for Deaf women	Collectivist cultural beliefs that support keeping the family together and not disclosing "private" matters

출처: Tabibi, Ahmad, Baker, & Lalonde. (2018).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Immigrant and Refugee Women.

- 제도개선 방안 관련: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denizenship)의 확립 및 이에 따른 가정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 논의
 -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지역 주민"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노력을 경주 및 가정폭력 발생 시 사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실현 가능성 또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 체류 외국인의 지역 주민으로서 "주민성"을 인정 &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국인 주민들과 동일하게 가정폭력을 경험 시 조력과 지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 경로와 범위를 확대
 - 국민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지역 주민, 이른바 데니즌(denizen) 혹은 데니즌쉽(denizenship)의 관점에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처우 및 가정폭력의 문제를 접근
- 가정폭력 경험 이주여성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비자체계 마련
 - 미국의 U비자 운영방식을 차용하여 국내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들의 보호와 치료 및 안정적인 체류를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자코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 현행 비자체계상 G-1 비자 세부코드(G-1-11)에서 성폭력 및 폭행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양상
 - 현행 기타 비자(G-1) 체계 안에 두는 것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비자 코드를 부여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대상들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고

※ 미국의 U 비자

- U 비자는 각종 범죄의 피해자인 체류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 & 이는 2000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성적 학대, 외국인 인신매매 및 기타 범죄 등에 연루된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지역 경찰이 이들을 해당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도록 유도
- U 비자의 경우 미등록/비합법 체류자의 경우 폭력의 피해를 소명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은 이후 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
- U 비자는 범죄 피해를 입은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계가족까지 신청이 가능 &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USCIS는 매년 최대 약 1만 명까지 해당 비자를 발급

<표> 미국 USCIS의 연도별 U비자 신청 및 승인/거부 현황(2009-2021년)

연도	유형/대상별 U 비자 신청 및 승인/거부 건 수											
	범죄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총계			
	접수된 청원	승인	거부	보류	접수된 청원	승인	거부	보류	접수된 청원	승인	거부	보류
2009	6,850 (271%)	6,045 (239%)	661 (2.6%)	11,740 (464%)	4,102 (251%)	2,838 (173%)	158 (1.0%)	9,275 (368%)	10,952 (26.3%)	8,883 (213%)	819 (2.0%)	21,015 (50.4%)
2010	9,657 (310%)	10,015 (322%)	3,995 (128%)	7,480 (240%)	6,418 (261%)	9,315 (379%)	2,576 (10.5%)	6,242 (25.4%)	16,075 (28.9%)	19,330 (347%)	6,571 (11.8%)	13,722 (24.6%)
2011	14,647 (397%)	10,025 (271%)	2,007 (5.4%)	10,250 (27.8%)	10,033 (36.3%)	7,602 (27.5%)	1,645 (6.0%)	8,329 (30.2%)	24,680 (38.2%)	17,627 (27.3%)	3,652 (5.7%)	18,579 (28.8%)
2012	21,141 (401%)	10,031 (190%)	1,684 (3.2%)	19,824 (37.8%)	15,126 (38.2%)	7,421 (18.7%)	1,465 (3.7%)	15,592 (39.4%)	36,267 (39.3%)	17,452 (189%)	3,149 (3.4%)	35,416 (38.4%)
2013	25,486 (360%)	10,022 (142%)	1,840 (2.6%)	33,409 (47.2%)	18,266 (35.3%)	7,724 (14.9%)	1,234 (2.4%)	24,480 (47.3%)	43,752 (35.7%)	17,746 (14.5%)	3,074 (2.5%)	57,889 (47.3%)
2014	26,089 (30.5%)	10,077 (11.8%)	3,662 (4.3%)	45,814 (53.5%)	19,297 (30.5%)	8,457 (13.3%)	2,655 (4.2%)	32,948 (52.0%)	45,386 (30.5%)	18,534 (12.4%)	6,317 (4.2%)	78,762 (52.9%)
2015	30,129 (28.3%)	10,060 (9.5%)	2,440 (2.3%)	63,779 (59.9%)	22,636 (28.8%)	7,649 (9.7%)	1,754 (2.2%)	46,507 (59.2%)	52,765 (28.5%)	17,709 (9.6%)	4,194 (2.3%)	110,286 (59.6%)
2016	34,797 (26.0%)	10,019 (7.5%)	1,761 (1.3%)	87,290 (65.2%)	25,469 (26.0%)	7,624 (7.8%)	1,257 (1.3%)	63,616 (64.9%)	60,266 (26.0%)	17,643 (7.6%)	3,018 (1.3%)	150,906 (65.1%)
2017	37,287 (23.1%)	10,011 (6.2%)	2,042 (1.3%)	112,272 (69.5%)	25,703 (22.4%)	7,628 (6.6%)	1,612 (1.4%)	79,971 (66.6%)	62,990 (22.8%)	17,639 (6.4%)	3,654 (1.3%)	192,243 (69.5%)
2018	34,967 (19.2%)	10,009 (5.5%)	2,317 (1.3%)	134,714 (74.0%)	24,024 (18.8%)	7,906 (6.2%)	1,991 (1.6%)	94,050 (73.5%)	58,991 (19.0%)	17,915 (5.8%)	4,308 (1.4%)	228,764 (73.8%)
2019	28,364 (14.7%)	10,010 (5.2%)	2,733 (1.4%)	151,758 (78.7%)	18,861 (14.2%)	7,846 (5.9%)	2,397 (1.8%)	103,737 (78.1%)	47,225 (14.5%)	17,856 (5.5%)	5,130 (1.6%)	255,495 (78.4%)
2020	22,358 (11.4%)	10,013 (5.1%)	2,693 (1.4%)	161,708 (82.2%)	14,090 (10.7%)	7,212 (5.5%)	2,472 (1.9%)	103,366 (82.0%)	36,448 (11.1%)	17,225 (5.2%)	5,165 (1.6%)	270,074 (82.1%)
2021	21,874 (10.6%)	10,003 (4.8%)	3,594 (1.7%)	170,805 (82.8%)	15,290 (11.0%)	6,728 (4.8%)	3,085 (2.2%)	114,450 (82.0%)	37,164 (10.7%)	16,731 (4.8%)	6,679 (1.9%)	285,255 (82.5%)
2022년도(4분기)												
1분기	6,997 (3.8%)	4,934 (2.7%)	568 (0.3%)	172,786 (93.3%)	4,958 (4.0%)	3,058 (2.5%)	524 (0.4%)	116,148 (93.2%)	11,955 (3.9%)	7,992 (2.6%)	1,092 (0.4%)	288,934 (93.2%)
2분기	6,235 (3.4%)	4,618 (2.5%)	945 (0.5%)	174,273 (93.7%)	4,302 (3.4%)	3,262 (2.6%)	868 (0.7%)	116,896 (93.3%)	10,537 (3.4%)	7,880 (2.5%)	1,813 (0.6%)	291,169 (93.5%)
3분기												
4분기												
	13,232 (6.7%)	9,552 (4.8%)	1,513 (0.8%)	174,273 (87.8%)	9,260 (6.9%)	6,320 (4.7%)	1,392 (1.0%)	116,896 (87.3%)	22,492 (6.8%)	15,872 (4.8%)	2,905 (0.9%)	291,169 (87.5%)

출처: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data/I918u_visastatistics_fy2022_qtr2.pdf

○ 호주의 연계비자(bridging visa) 시스템을 차용하는 방안

- 호주 연계비자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기존 비자 소지 외국인이 환경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체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법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다른 연관된 비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
- 배우자에 종속된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처분/심사를 정책당국에서 받는 과정에서 미등록/불법의 늪에 빠지지 않고 체류관리/비자정책의 틀 안에서 보호받

을 수 있을 방안이 연계비자 시스템에 안에서 가능한 상황

- 지극히 경직적인 비자체계와 체류관리 행정체계를 가진 한국에서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향후 비자체계의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노력

- 체류자격에 따라 해당 경험 이주여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제공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개선
- 캐나다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조력 요청 시 해당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묻지 않도록 권고(don't ask & don't tell)

□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의 내실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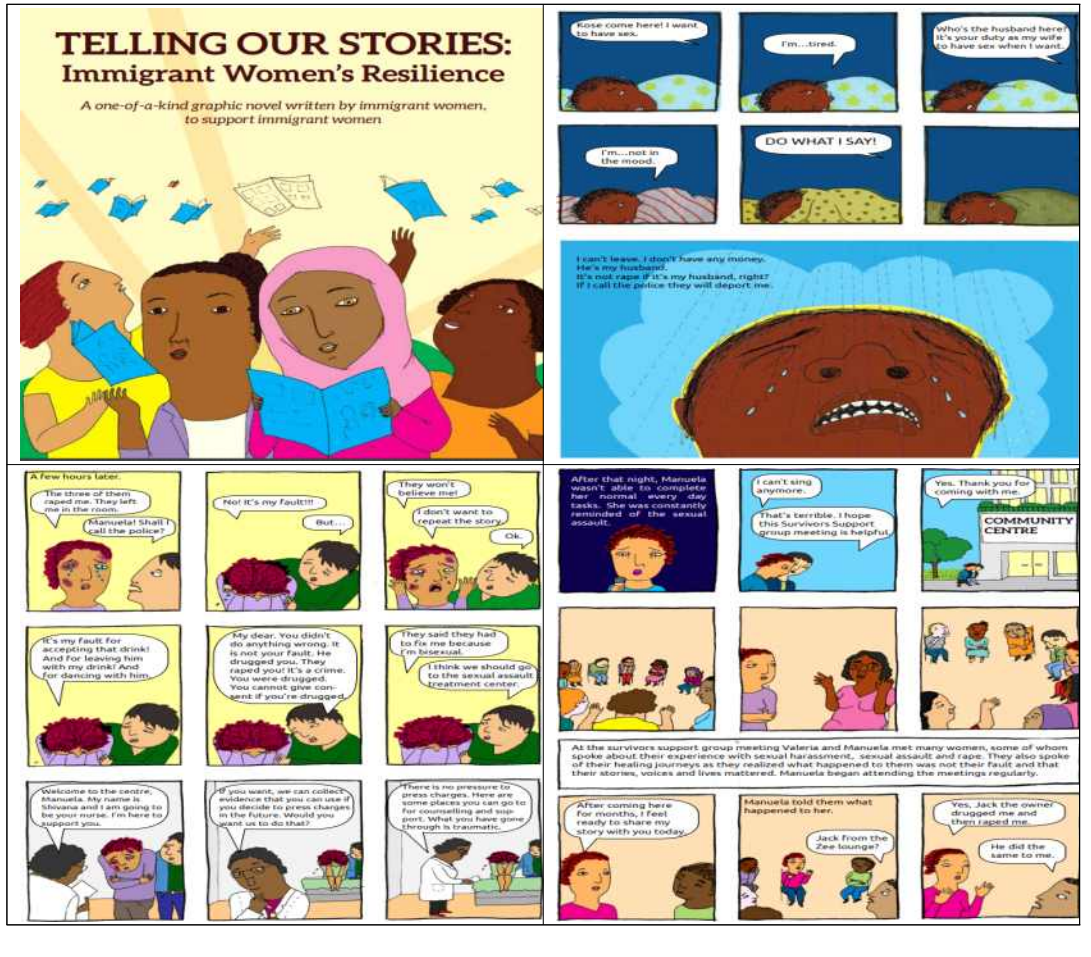
- 이주여성이 모국어를 사용하여 폭력 경험 및 상황에 대응하고 해당 경험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 통번역 인력의 양성 및 운영 필요

□ 가정폭력 경험 이주여성들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교육기회 및 소통의 장 마련

-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들이 상호 소통 및 각기 간직한 아픔을 소통과정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기회/장(arena)의 마련
 - 지자체 등이 주도하거나 지자체-시민사회단체가 협업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요리, 기타 활동을 주제로 한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 & 이를 통해 해당 모임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이 각기 가진 폭력의 경험과 트라우마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지역 차원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로/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의 장으로 활용
- 다양한 문화권의 이주여성들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교육 등의 기회 제공
 - 일반적으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 방식이 아닌, 만화 등 그래픽 자료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 가정폭력의 위험성/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

※ 캐나다 지역 커뮤니티 내 가정폭력 경험 이주여성의 회복과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 노력 사례

- “Telling Our Stories: Immigrant Women’s Resilience” (웹툰, 만화 양식)
 -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 관련 사례 및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을 만화로 보여주고 이를 지역 커뮤니티 내 이주여성 대상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다국어 버전으로 제공)



출처: 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

(<https://ocasi.org/campaigns/4ImmigrantWomen>)

- 체류자격 취약 외국인(미등록/비합법 체류) 여성 대상 강화된 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미등록 체류 이주 여성들은 체류자격의 취약성으로 인해 배우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지라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주 수용국으로부터 안정적인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부여받는 것이 쉽지 않음
 - 2020년 10개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미등록/비합법 이주여성 대상 대응체계를 비교한 결과,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벨기에, 독일, 폴란드, 스위스, 영국 등)
 - 영국의 경우 체류자격이 무엇인가 여부 이전에 배우자에 종속된 비자 (spouse-dependent visa)로 인해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의 경우 특별거주비자 (special residence permit)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 것은 가능

-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미등록 이주여성들에게 합법적인 거주허가를 부여
- 다만 거주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미등록 이주여성에게 고도의 입증책임(high standards of proof)을 요구 & 관련 거주허가를 부여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행정적 재량 행사가 이루어지는 양상(PICUM, 2020)

<표> 이주여성 피해자 유형별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부여하는 국가 사례

Country	Domestic Violence		Labour Exploitation	Trafficking	
	Regular migrants	Undocumented migrants		Police cooperation	Humanitarian reasons
Belgium	Yes	No	Yes*	Yes	Yes
France	Yes	Yes	No	Yes	No
Germany	Yes	No	Yes	Yes	No
Greece	Yes	Yes	Yes	Yes	Yes
Italy	Yes	Yes	Yes	Yes	Yes
Netherlands	Yes	Yes	Yes	Yes	Yes
Poland	Yes	No	Yes*	Yes	No
Spain	Yes	Yes	Yes	Yes	Yes
Switzerland	Yes	No	No	Yes	Yes
United Kingdom	Yes	No**	Yes	Yes	Yes

*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 Only if a previous residence permit on family grounds has expired because of the domestic violence.

출처: PICUM. (2020). Insecure Justice? Residence Permits for Victims of Crime in Europe.

□ <불법/미등록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관련

○ 통보의무 면제 범위의 확대 노력

- 현행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
-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라는 피해사실을 해당 외국인이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함께 존재(쌍방폭행)하거나, 범죄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실제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3자(참고인, 증인 등)의 경우에도 보호되지 못하는 등 여러 한계가 대두
- 종래 제도 운영은 경찰 공무원이 통보의무 면제대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상당한 행정적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바, 이러한 재량의 영역/범위를 줄이고 「출입국관리법」제84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열거하는 방안을 고려

○ 쌍방폭행 관련: 현행 경찰청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

- 경찰청 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업무처리 지침>(‘19년도 버전)에 따르면, “쌍방폭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보 대상에 포함되나, “불법/미등록 체류자에게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사고 대응과정에서 박쇄하 목기전 총독 득음 “정당방위”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경찰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 필요

<표> 불법/미등록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시행결과(2013년-2019년)

구분	통보의무 면제 건수 (건)	대상 인원 (명)
2013년도	65	110
2014년도	61	85
2015년도	85	98
2016년도	111	158
2017년도	116	152
2018년도	115	138
2019. 8월말	84	148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20)

- 이민/출입국 행정 관련 특사경으로서 “경찰(Police)의 역할” 관련
 - 이민 행정에서 경찰의 상충되는(될 수 있는) 역할: 정책 딜레마의 발생 가능성
 -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치안 유지 vs. 이민자 규제/징벌정책(immigration enforcement)의 집행/지원 역할
 - 이러한 상충적인 역할을 경찰에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의 대상인 이민자/외국인(특히 체류자격이 취약한 미등록/비합법 체류자)들이 미등록/비합법 체류라는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이 노출될 경우 동법상 특사경의 자격으로 경찰은 보호의 대상인 이민자/외국인에 대한 규제/처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상황
 - 이민자/외국인을 규제/처벌하는 역할 수행자(immigration officer/enforcer)로서의 경찰이 아닌, 지역사회 내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인 외국인/이민자 커뮤니티의 안전과 보호 역할에 충실한, 지역 내 구성원들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시키는 이른바 “지역 커뮤니티 수호자(community policing)”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대응이 필요
 - 경찰이 외국인/이민 행정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에 따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특히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 대상)에 대한 신고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 경찰이 이민자/외국인 처벌과 출입국과 적극적으로 연계될 경우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미등록 이주여성들의 신고 비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지역 경찰의 이민 행정에 대한 개입 정도와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의 신고율 간 관계를 연구한 Amuedo-Dorantes & Arenas-Arroyo(2020)에 따르면, 지역 경찰이 이민자 규제/처벌 정책에 개입을 일정수준 제한하는 정책을 가진 지방 정부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이 신고비율이 2.24%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
 - 이러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결국 이주여성이 배우자에 의한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는 지역 경찰이 이민/외국인 행정 업무와 일정 거리를 유지할 때, 적극적인 개입을 줄여나갈 때 비로소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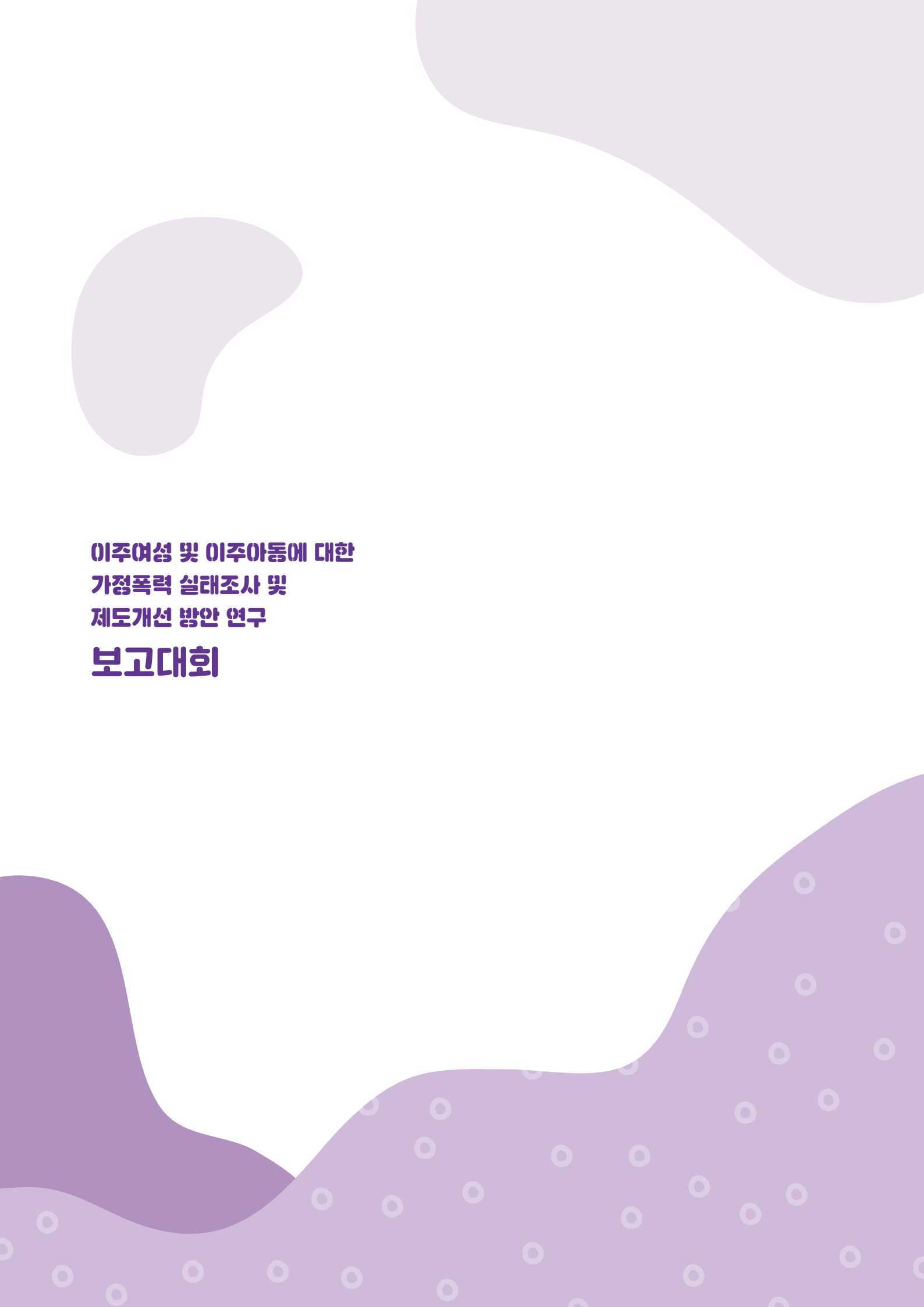
<그림>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대응 관련 지역 경찰의 역할: 미국의 지방정부 사례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20)

참고문헌

정동재. (2019).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데니즌십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통합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20). 경찰의 불법체류자 대응방안 연구. 경찰청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European Parliament. (2013). Access to Shelters of Undocumented Migrant Women Fleeing Domestic Violence: the Legal and Practical Situation in the Member States.
 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 Telling Our Stories: Immigrant Women's Resilience.
 PICUM. (2020). Insecure Justice? Residence Permits for Victims of Crime in Europe.
 Tabibi, Ahmad, Baker, & Lalonde. (2018).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Immigrant and Refugee Wome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대회**